

KOTRA자료 22-095

2022 인도네시아 무역 · 투자 FAQ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2 인도네시아 무역 · 투자 FAQ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인도네시아 개황	12
II. 인도네시아 경제지표	13
Part 1. 무역 FAQ	17
[통관]	17
Q1. 기본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7
Q2.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물품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제한 품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8
Q3. 물품 수입을 위해 통관 신고를 하려 하는데 한국에서 수출한 HS 8자리가 인도네시아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HS 코드 분류를 어떻게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19
Q4. 바이어에게 동일한 제품을 2회에 걸쳐 수출했는데, 첫 번째는 문제없이 통관이 되었지만, 두 번째 통관 시 세관에서 HS 코드가 부적절하다며 HS 코드 부적절 적용에 대한 관세추징과 행정벌금을 납부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9
Q5. 수입통관 절차를 수입 업체가 아닌 수출 업체가 진행할 수 있나요?	20
Q6.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 인정 약정이 발효된다고 합니다. 만약 AEO 업체로 인정받는 경우 인도네시아 통관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
Q7.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제조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상 문제가 있나요?	21
Q8. 통관에 문제가 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21
Q9. 선적 전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2
Q10. 인도네시아에도 수입 쿼터제가 있나요?	23
Q11. 보세업체가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 법인에서 수출을 위해 원부자재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제세	25

및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Q12. 보세구역으로 물품이 수입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5
Q13. 현지 법인에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수입해 참여중인 인프라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추후 한국으로 반출 예정인 자본 재인데 수입세와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27
Q14. 인도네시아 정부, 학교, 종교시설등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통관에 필요한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할까요?	29
Q15. 샘플 통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9
Q16. 전시회에서 사용할 용도로 샘플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려고	30
하는데 부피가 너무 커 핸드캐리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 야 하나요?	
Q17. 해외 직구와 역직구를 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 거래 업체 이용이 가능한가요?	31
Q18.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원자재 수출입 규제를 한다고	33
하는데, 그 법적 배경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관세(FTA 활용 포함)]	34
Q19.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34
Q20. 택배와 같은 탁송 화물을 이용하면 어느 세금이 부과되나요?	35
Q21. 인도네시아는 수출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38
Q22.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활용 가능한 FTA 조약은 무엇인 가요?	39
Q23. FTA 특혜 세율보다 기본 세율이 낮으면 FTA를 꼭 이용 할 필요가 없나요?	41
Q24.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과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42
Q25.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43
그렇다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26. 상호대응세율제도 정의가 무엇이고 언제 활용하는 제도인가요?	45
[무역 거래(수출금융)]	46
Q27. 위탁 판매 수출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지요?	46
Q28. 인도네시아 내륙에 상품을 공급하는데 루피아가 아니라 달 러와 같은 외환으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한가요?	46
Q29. 한국 수출 업체가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공장으로 수출한 후,	47

한국 수출 업체와 보세공장이 먼저 결제를 하고, 인도네시아 내국 바이어가 보세공장으로 대금납부 할 수 있나요?	
Q30. 물품대금 수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어를 상대로 신용장 개설을 요구 할 계획인데 인니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불가한가요?	47
Q31. 대금 수령시, 인도네시아 구매 업체에서 한국에 있는 판매 업체에게 루피아(IDR) 송금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48
Q32. 바이어의 수출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49
Q33. 인터넷을 통해 한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거래를 제의합니다. 무역 사기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50
Q34. 무역 사기 업체한테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1
[수입을 위한 인증 및 규제]	52
Q35. BPOM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2
Q36. SNI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58
Q37. 할랄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61
Q38. 국산부품 사용비중(TKDN)이 뭔가요?	66
Q39.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필수 인증 대상인지 확인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HS 코드 8자리가 다른 경우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69
Q40. 사전수입승인제도 운영 동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69
Part 2 투자 FAQ	75
[외국인 투자 제도]	75
Q41. 인도네시아의 투자 정책과 각 분야별 담당부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75
Q42.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76
Q43.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해당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79
Q44.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의 정보를 알 수	82

있을까요?	
Q45.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 위치와 입주시 혜택,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84
Q46.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경제구역 위치와 입주시 혜택,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85
Q47.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보세구역 내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87
Q48.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제반시설(공업용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 등) 정보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88
Q49.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 투자를 철회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90
Q50. 현지 체류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발급절차, 구비서류, 예상 비용을 알려주세요.	91
Q51. 장기프로젝트로 관련 인원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출장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92
[투자 진출(공통)]	92
Q52.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92
Q53.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현지통화(루피아)로만 거래가 가능한가요?	94
Q54. 인도네시아에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기 전 기본정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95
Q55. 현지법인/지사 명이나 외국인 개인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모두 가능한지요?	95
[투자 진출(법인)]	98
Q56. 현지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8
Q57. 법인명 설립에 대한 규정이나 금지된 단어가 있나요?	100
Q58. 신규법인 설립시 초기 투자비용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0
Q59. 법인 설립후 최소 자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101
Q60.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인 100억 루피아 자본금에서 일부를 인출했다 다시 입금하는 경우에도 최소 자본	102

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Q61. 법인 설립후 부지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건설까지 자 제한 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02
Q62. 제조업 법인 설립시, 제조업과 상이한 유통업이나 무역업 등도 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108
Q63. 과실을 송금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108
Q64. 투자활동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1년에 몇 번이나 작성 해야 하나요.	109
Q65. 현지법인 청산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109
Q66. 인도네시아의 경매,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13
Q67. 제조(생산) 법인으로 진출한 다음에 무역이나 판매 기능을 추가할 수있을까요? 추가가 가능한 경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4
Q68. 지사와 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사와 대표사 무소간 차이도 궁금합니다	114
[투자 진출(대표사무소)]	116
Q69. 대표 사무소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16
Q70.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하 다면 비자를발급할 때 근무지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118
Q71. 대표 사무소가 주기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활동보고 서가 있나요?	118
Q72. 대표사무소나 지사 설립시 법으로 규정된 회사명 표기가 있나요?	119
Q73. 자사를 폐쇄하는 절차, 비용 및 소요기간 등이 궁금 합니다.	119
Q74. 대표 사무소로 진출한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119
[투자 진출(건설업)]	120
Q75. 건설업 진출은 다른 법인/대표사무소(지사) 진출과 어떤 차 이가 있나요?	120
Q76. 건설업 진출을 위한 절차 및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120
Q77. 외국 건설회사의 건설면허 허가절차,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20

[노무관리]	123
Q78. 현지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시 외국인 1명당 현지인 고용 의무비율이 있는지요? 한국인은 몇 명이나 비자발급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23
Q79. 기존 법인장으로 국내 본사에 있는 직원으로 변경후 수입 대표 식으로 권한 위임하여 현지직원이 운영가능한지요?	124
Q80. 현지 임금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124
Q81. 인도네시아의 기준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26
Q82.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127
Q83. 아웃소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29
Q84. 현지 법인에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30
Q85. 현지 법인에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31
Q86. 고용주가 임금외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31
Q87.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해 정관상 대표로 되어있었는데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취업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존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회사는 대표이사로 등록, 새로운 회사는 근로비자 발급 희망)	132
[세무관리]	133
Q88. 현지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33
Q89. 법인세 납부에 대해 알려 주세요.	134
Q90.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납품 및 설치 용역시 세금 및 조세협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36
Q91. 인도네시아 내의 세금 환급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37
Q92.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	137
Q93.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상한선은 얼마	139

마인가요?	
Q94. 지사로 진출했는데,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하라 합니다. 이 경우 대응방안은 없는 건가요?	139
[지식 재산권]	141
Q95.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141
Q96.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46
Q97. 진출하려고 보니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47
Q98. 가품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7
Q99.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한국 기업에게 상의 없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148

I. 인도네시아 개황

국가명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면적	1,904,569km ² (자료원 : World atlas (2021.2))
인구	272,682,500명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2022.2))
민족	자바족(40.1%), 순다족(15.5%), 말라유족(3.7%), 바타족(3.6%) 등 1,300여 부족
언어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
종교	이슬람교(86.9%), 기독교(7.5%), 가톨릭교(3.1%), 힌두교(1.7%), 불교(0.8%) (자료원 : 인도네시아 내무부(2021.12))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국가원수	2014. 10.~2019. 10(조코 위도도 1기) 대통령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부통령 : 유슈 깔라(Jusuf Kalla) 2019. 10.~2024. 10(조코 위도도 2기) 대통령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부통령 : 마루프 아민(Maruf Amin)”

II. 주요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5.1	5.2	5.0	-2.1	3.7	5.4(2분기)
명목 GDP (십억\$)	1,016	1,105	1,120	1,060	1,187	657 (~2분기)
1인당 GDP(PPP, \$)	11,070	11,800	12,480	12,220	13,100	-
1인당 명목 GDP(\$)	3,885	3,947	4,196	3,922	4,350	-
정부부채 (% of GDP)	29.4	30.0	30.5	38.5	41.1	61.3 (~2분기)
물가상승률(%)	3.8	3.2	3.0	1.7	1.9	4.9 (*22.7)
실업률(%)	5.5	5.3	5.3	7.1	6.5	5.8 (2월)
수출액 (백만\$)	67,640	80,215	167,003	163,306	231,522	141,126 (2분기)
수입액 (백만\$)	56,925	187,917	170,388	141,622	196,190	116,183 (2분기)
무역수지 (백만\$)	10,715	-7,702	-3,385	21,684	35,332	24,944 (2분기)
외환 보유고(백만\$)	130,196	120,654	129,183	135,897	144,900	132,200 (2분기)
이자율(%)	4.25	6.00	5.00	3.75	3.50	3.75 (*22.8,23)
환율 (루피아/US\$)	13,381	14,237	14,146	145,764	14,312	14,851 (*22.8,24)

※ 자료출처 :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청, Bank Indonesia, World Bank, Global Trade Atlas, BKPM

※ 참고 : 인도네시아 약사, 개황, 경제등 세부정보 열람을 희망 할 경우 news.kotra.or.kr에 접속, 인도네시아 출장자료, 인도네시아 국가정보,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회원, 비로그인 상태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Part 1. 무역 FAQ

1. 통관
2. 관세(FTA 활용 포함)
3. 무역 거래(수출금융)
4. 수입을 위한 인증 및 규제

본 책자 내용은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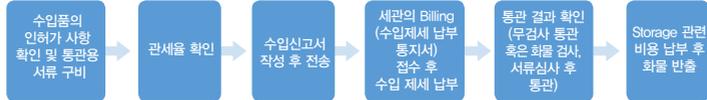


Part 1. 무역 FAQ

[통관]

Q1. 기본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를 Priority, Green, Red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수입 통관 시 통관 절차 단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Priority Channel은 관세청 평가에 의한 신용도 최상위 업체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수입제세 납부 전에 무검사 통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기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화물 검사 후 통관이 종료됩니다.

-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품목 수입 시
- 한시적 수입 화물 수입 시
- 재수입 화물 수입시
- 정부 부처에서 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 수입시

Green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 서류 및 화물 검사 없이 통관됩니다.

Red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서류 및 화물 검사 완료 후 통관됩니다. 기존 Yellow Channel 폐지(2022.4.22.부)

- 수입통관용 서류

- 필수와 보조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필수서류	보조서류
필수 서류는 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보조 서류는 통관 심사 중 세관 요청 시 제출하며, 수입가액 심사와 관세율 적용의 주요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rigina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원본) - Delivery Order (화물인도 지시서) - Invoice, Packing List (송장 및 물품명세서) - Insurance Policy (적하보험) - FTA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통관 진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les Contract (판매 계약서) - Purchase Order (구매 주문서) - Remittance Slip / Bank Statement (송금전표/은행거래내역서) - Catalog / Specification (카탈로그/설명서)
--	---

- 수입 시 납부하는 수입제세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품목별 해당 세금이 상이하므로 납부 전 HS코드에 따른 세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입관세(Import Duty): Bea Masuk
- 부가가치세(VAT): PPN (Pajak Pertambahan Nilai)
- 선납 법인소득세(Corporate Tax in advance): PPH22 (Pajak Penghasilan Pasal 22)
- 특별소비세(Sales Tax on Luxury Goods):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Mewah
- 소비세(Excise): Cukai

- 수입제세 계산방식은 하기와 같으며 적하보험을 부보하여 수입 통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관세 = 과세가액(CIF) × 관세율
- 부가가치세 = (과세가액+ 수입관세) × 110%
- 법인세 = (과세가액+ 수입관세) × 2.5% (or 7.5% / 10%)
- 특소세 = (과세가액+ 수입관세) × 특소세율

- 화물검사

- Physical Inspection : 내품 100% 전수 검사를 실시하며, 선적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 적발 시 관세추징 및 행정벌금이 부과됩니다.
- HI-CO SCAN X-RAY: 내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며 HI-CO SCAN X-RAY로 투과하여 검사합니다.

Q2.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물품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수입 제한 품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수입제한 혹은 수입금지 여부는 인

도네시아 관세청 포털사이트(www.insw.go.id)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출 품목의 필수 인증 종류, 세금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바이어에 별도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Q3. 물품 수입을 위해 통관 신고를 하려 하는데 한국에서 수출한 HS 8자리가 인도네시아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 HS 코드 분류를 어떻게 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HS코드 앞 6자리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나, 뒷자리는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인도네시아 HS코드는 인도네시아 관세청 포털사이트(www.insw.go.id)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HS코드 6자리를 검색하면, 해당 HS코드에 대한 하위 인도네시아 코드와 품목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색된 앞 6자리에 해당하는 하위 코드의 품목을 찾은 후 수입 품목과 일치하는 HS 코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바이어에게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조사도 가능합니다.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이용시 검색창에 ‘코트라 해외 시장조사 서비스’ 로 검색하시면 상세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 바이어에게 동일한 제품을 2회에 걸쳐 수출했는데, 첫 번째는 문제없이 통관이 되었지만, 두 번째 통관 시 세관에서 HS 코드가 부적절하다며 HS 코드 부적절 적용에 대한 관세추징과 행정벌금을 납부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결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첫 번째 통관 시 세관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통관 시켰을 확률이 큼니다. 이후 2차 통관 시 해당 제품의 HS코드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였고 추가 비용을 요청한다면 지불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입 신고 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신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관세청에 재검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HS코드는 관세청 기술

국 혹은 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5. 수입통관 절차를 수입 업체가 아닌 수출 업체가 진행할 수 있나요?

한국 업체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할 경우 한국 수출자 명의로는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수입 통관은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 허가를 득한 업체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수입업체가 수출 업체에 발송 요청하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이며 이외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도 관세 면제 등의 절차에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국 수출 업체가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을 직접해야하는 경우라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6.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된다고 합니다. 만약 AEO 업체로 인정받는 경우 인도네시아 통관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6월 30일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에 있습니다. 상호인정약정은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으며 2022년 6월 30일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를 축소, 우선통관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 중국 ·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 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7. 한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제조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통관상 문제가 있나요?

수출자(한국), 제조자(중국), 수입자(인도네시아)인 경우, 중국에서 제품 생산 후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 아세안-중국 간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의 3국 간 비즈니스 시 주의사항은 중국발 제품에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인 FORM-E 를 발급 받을시 FORM-E 상에 한국 수출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삼국간 Invoice 즉 한국 수출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Invoice 에는 한국 수출자가 발행한 Invoice Number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Third Party Invoicing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Q8. 통관에 문제가 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지는 해운화물의 경우 인도네시아 항구까지 약 10일 소요되며 항공화물의 경우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통상 수입자가 제출한 선적서류상의 하자 발견시 혹은 화물 검사를 할 경우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수입제세 납부 후 1~3일 이내에 통관이 종료 됩니다.

통관이 지연되면 통관 진행을 의뢰한 통관업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혹은 세관에 방문하여 통관 담당관과 면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담을 통하여 지연 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EMS등 우편으로 보낸 제품에 대한 배송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EMS 등록번호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수입 통관 중 화물의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먼저 세관을 방문하여 면담하신 후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수입 통관중 통관이 보류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선적서류와 화물 불일치 및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화물검사 실시 후 실제 화물과 통관 서류 상 화물이 다를 경우 혹은 서류상의 갯수와 실제 갯수가 불일치한 경우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화물의 수입시 구비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구비하지 않고 통관 진행한 경우도 수입 통관 보류 대상이 됩니다. 화물 갯수 불일치 및 화물 불일치 부분은 통상 관세추징 및 행정벌금을 납부하고 화물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으나 수입시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통상 수입통관

이 불허됩니다. 이런 경우 세관에 반송 처리 요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9. 선적 전 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 수입화물 중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한 화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한 화물들이며 선적지 검사기관에서 화물 SURVEY를 실시한 이후 선적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선적 전 검사건 발생시 신청 및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SUCOFINDO : 기계 설비류의 선적 전 검사 신청 기관
- KSO SUCOFINDO : 기계 설비류를 제외한 품목의 선적전 검사 신청기관

선적 전 검사 신청기관에 화물검사 접수 완료 후 승인을 받으면 이에 근거 선적지의 수출자는 지정된 화물 검사기관의 검사관과 협의하여 화물 검사 일을 확정하고, 화물검사 후 수출선적을 완료합니다.

선적 전 검사를 신청한 인도네시아 수입자는 화물검사 보고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통관 시 수입신고서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 번호를 명시하고 필요시 세관에 선적 전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통관 진행을 합니다.

선적 전 검사 진행의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내용	기관	기간	참고 사항
1	수입자 최초 인니 검사기관 SUCOFINDO 사이트에 등록 (수입허가서등 회사 법인서류필요)	Sucofindo/ KSO Sucfindo	3 일	www.sucofindo.co.id www.scisi.co.id 신청 완료 시 ID/Password 부여
2	ID/Password 접수후 Packing list, Invoice 에 근거 온라인 선 적전 검사 신청 (Verification Request) 및 Verification Order를 발급받아 선적지에 전달)	Sucofindo/ KSO Sucfindo	5-7 일	선적전 검사 온라인 접 수후 검사기관인 SUCOFINDO/KSO Sucofindo 에서 검사 비용 견적서가 발송되 며 납부후 SUCOFIN- DO/KSO Sucofindo 에서 선적지 검사기관 에 검사요청 통지

3	선적지에서 검사 진행 및 완료	지정 검사기관	7일 이내	1. 선적지 SUCOFINDO에서 신청서 양식 수출자 담당자의 메일로 전달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한 뒤 검사 일정 받음 (신청서제출 후 통상 1주일 이내검사 진행) 2. 검사는 통상 당일 완료 3. 검사관은 해당 제품의 품명 및 원산지, HS 코드 등 제원들 및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인니로 검사 보고서 통지
4	선적전 검사 REPORT에 근거하여 인니 Sucofindo/ KSO Sucofindo 최종 화물검사 보고서를 발행 (Laporan Surveyor)	Sucofindo/ KSO Sucofindo	5-7 일	인니 Sucofindo/KSO Sucofindo 는 선적지 검사보고에 근거하여 검사보고서 발급

Q10. 인도네시아에도 수입 쿼터제가 있나요?

수입 물품의 수입량을 통제하는 수입 쿼터의 역할을 하는 제도는 사전수입 허가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인도네시아어 명칭은 Persetujuan Impor이며 약어로는 PI로 통칭 합니다. 주요 대상 품목은 철강, 석유, 원예작물, 타이어, 에너지 관련, 임업 관련 등입니다. 따라서 바이어나 현지법인(무역사 등) 수입 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사전 수입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이후 수입하셔야 합니다.

- 사전 수입 허가(Persetujuan Impor) 승인 절차*



*신청 주체 : 인도네시아 수입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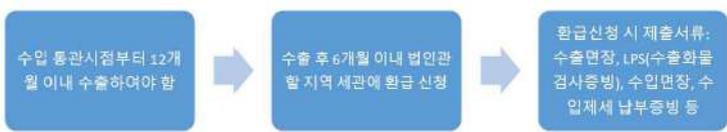
절차	세부 내용
①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 관세 포털 사이트인 INSW에 접속하여 등록하여야함. *주소 : https://www.insw.go.id ● 사전 수입승인신청서는 INATRADE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시 다음의 내용을 나타내는 서류를 갖춰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자 등록 번호(API) 정보가 포함된 사업자 등록번호(NIB, Nomor Induk Berusaha) - 인도네시아 국가 싱글 윈도우(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인도네시아 산업부(또는 지정된 기관)가 발급한 기술 검토서 - 판매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만일 수입업자가 철강 비 파생제품을 수입하는 일반 수입자 등록번호(API-U) 성격의NIB을 소지한 수입업자일 경우) - 밀 서티(Mill certificates, 합금강 수입에 한함)
② 승인 또는 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전 승인이 완료되면 유효 기간 하기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I-P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1년 - API-U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6개월
③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전 승인 요청이 승인된 후 수정 사항 발생시 수정 신청서를 INSW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함.
④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전 수입 승인서 만료 시점에 소진되지 않은 품목의 수입을 진행 할 경우 만료 14일 이전에 해당 수입 업체는 연장 신청서를 INSW를 통해 요청하여야 함. ※ 해당 연장이 승인되면, 최대 30일간 유효

Q11.보세업체가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 제조 법인에서 수출을 위해 원 부자재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수입제세 및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수입관세 유예 혹은 환급 받을 수 있으나 KITE 업체로 등록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KITE 업체로 등록이 완료되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가 아닌 수입 업체에서 KITE 등록을 하여 수출용 원부로 승인 받은 품목은 승인 수입쿼타 및 선적전 검사면제 대상 화물이 되지만 일부 품목은 KITE가 되어도 수입 쿼타를 받아야하니 수입전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KITE 업체가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 제품 수출을 하고 수입 관세를 환급 받고자 할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Q12.보세구역으로 물품이 수입될 경우 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보세구역은 보세구역으로 물품이 수입될 시 수입제세의 납부가 유예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해외 물품이 수입되었을때 인도네시아의 보세구역에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기간중에는 수입제세의 납부를 유예 받고 수입한 물품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이되면 수입제세 납부의무가 해제됩니다.

단, 보세구역에 위치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원부자재중 인도네시아 국내 내 수용 물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부자재는 수입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보세구역은 하기와 같으며 보세구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각종 인허가가 면제됩니다.

- (1) 보세구역 : 보세구역(Kawasan Berikat/KB)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혜택임
 - 항공, 방위산업, 선박제조, 철도 등 특정 산업에도 부여됨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제세의 납부가 보세되며 수출후 세관의 감사를 거쳐 최종 면세 처리됨
- 보세구역에 위치한 보세법인은 전년 수출실적(해외수출/국내보세구역 / 국내자유무역지대) 대비 50%까지 내수판매 가능

(2)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종류

- 보세 사업자 (Bonded Company)
- 보세 산업단지 (Bonded Industrial Zone)
-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 보세 전시장 (Bonded Exhibition Place)
- 면세점 (Duty Free Shop)
- 보세 경매장 (Bonded Auction Place)
- 보세 재활용장 (Bonded Recycling Area)
- 보세 물류 센터 (Bonded Logistic Centre)**

* 보세 창고 : 보세 창고(Gudang Berikat)는 원부자재등의 수입화물을 보세상태로 최장 1년 보관 가능하며 분류와 패킹 등의 간단한 작업이 가능하며 VMI(VENDER MANAGEMENT INVENTORY)에 적합한 업종임.

(▼보세창고 종류)

- ▶ GUDANG BERIKAT : 화물을 보세 상태로 수입하고, 팩킹, 분류 이외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수입된 상태로 거래처에 공급 하여야 함
- ▶ PUSAT LOGISTIK BERIKAT : 보세 상태로 화물을 수입하나, 내부에서 재포장, 분류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어 GUDANG BERIKAT 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운영됨.
 - 일반 업체들의 화물(완제품)을 수입하여 PUSAT LOGISTIK BERIKAT에서 보세 상태로 보관하다가 필요시 재포장, 재분류 등을하여 세금 납부후 통관 및 반출이 가능

** 보세 물류 센터 : 보세 물류 센터(Pusat Logistik Berikat)는 보세창고와 유사하나 완제품을 최장 3년 동안 보세 상태로 화물 보관 가능하며 분류, 패킹, 분할 반출등의 작업이 가능하며 관세 지역 외부에서 수입한 재화 또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수입한 재화의 보관이 가능. 수입 물품, 수출 예정인 물품의 임시보관(최장 3년)이 가능

(3) 상기 지역에 대한 주요한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음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 선납법인세(PPh22)의 미징수
- 특정 재화에 대한 수입 관세의 유예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 미징수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에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를 조성하고자 보세 물류센터에 관한 규정(PER-01/BC/2016)을 발표했습니다.

Q13. 현지 법인에서 인프라 관련 설비를 수입해 참여중인 인프라 사업에 활용하려 합니다. 추후 한국으로 반출 예정인 자본재인데 수입세와 인허가 면제가 가능할까요?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Impor Sementara)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수입 화물의 사용 기간을 확정된 이후 확정된 기한 이내 재수출 될 화물에 대하여 수입관세 면제 혹은 수입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최장 허가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내 인프라 건설 관련업체의 건설장비 수입 등 일시적 수입을 요하는 화물인 경우 수입제세를 면제 혹은 절감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시적 수입화물 수입신청은 관할 세관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178/PMK. 04/2017 (개정106/PMK,04/2019)에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의 개요, 신청절차, 승인 조건, 주요 혜택, 수입관세 면세 화물, 수입관세 감면화물, 관련 유의사항, 한시적 수입화물통관 승인 취소 조건, 수입관세 면세 부분에 대한 담보제출 및 담보 회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시적 수입화물 승인대상은 비소모성, 변형불가 화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수입시와 반출(재수출)시 화물의 형태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품의 사용 목적이 확실하고 반출(재수출) 증빙을 구비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는 수입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허가등의 수입규제가 면제되며 수입관세면세 해당 화물은 수입관세면세, 부가세(특소세)면세, 법인세 면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관세 감면 해당 화물은 임시수입기간 동안 매달 수입관세 금액의 2%를 납부하여야하며, 부가세(특소세) 납부, 법인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한시적 수입화물(장비) 관련 부품 수입시 상기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면세/감면 금액은 세관에 담보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제세 면세화물(수입관세, 부가세, 법인세)에는 전시회용 화물, 공연용 장비, 운동경기 혹은 각종 시험용품, 화물 운송 포장재 및 도구, 관광용 선박(Yacht), 동물, 재난용 구호장비(물품), 육·해·공군 및 경찰용 화물, 상선 및 어선, 항공기 및 헬리콥터, 승객 및 승무원 개인화물, 차관 혹은 기부로 수입되는 국책 사업용 화물, 국제 여객 혹은 화물 수송 수단, 컨테이너 등이 있습니다.

수입관세 감면화물(수입관세금액의 2% 매달납부, 부가세 납부, 법인세 면세)은 생산용 혹은 인프라 구축용 기계설비, 수리용 장비, 시험용 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한시적 수입 화물 진행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분할 수입(Partial) 진행시 최초 수입화물 기준으로 허가 기간이 산정되며 두번째로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내에 수입해야 하며, 기간 초과 시는 승인효력이 상실됩니다.

아울러 관할세관의 승인없이 화물을 임의 이동한 경우, 화물을 최초 허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그리고 허가 기관을 초과한 경우는 한시적 수입화물로 인정받지 못해 수입시 혜택받은 수입제세 납부 및 행정벌금 추징 대상이 됨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수입제세 면세 화물의 수입 시 세관에 제출 담보회수는 다음의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승인기한 내 재수출 완료한 경우
- 승인기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화물을 사용하고자 하여 수입 제세 및 벌금 납부 완료한 경우
- 불가항력적인 상황(force majeure)에 의한 재수출 불가 상황으로 인하여 이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 인도네시아 중앙 부처에 기부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시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 허가 만료 최소 30일전 관할 세관에 재수출 허가 신청해야 하나 만료 기간 최소 2개월 이전부터 재수출 수속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허가 만료기간 이내에 재수출이 완료되지 않을시 수입 제세 및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벌금 부과기준은 납부해야 할 수입관세 기준 100%가 부과되는데, 이는 업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사전에 면밀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설업체 혹은 제조업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Q14. 인도네시아 정부, 학교, 종교시설등에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관에 필요한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할까요?

기부 물품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 부처간 원조 사업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개별 업체에서 인도네시아 개별업체(혹은 법인/단체)에게 기부로 화물을 발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증없이 진행하는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업체에서 관련 인허가(SNI 인증)를 득한 이후 정식 수입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단체 혹은 법인에 기부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중앙부처를 통하여 기부 화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수입허가는 필요치 않으며 세금납부 및 각종 인허가가 면제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을 택할 경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인증인 SNI라는 까다로운 인증을 발부 받아야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권장드리며, 이를 위해서 적절한 한국의 중앙정부기관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15. 샘플 통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샘플도 정상적인 수입통관 절차를 통해서 진행 해야 합니다. 샘플을 특송화물로 발송한 경우 USD 3,-(FOB) 가 이하에 대해서만 수입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샘플 무관세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허가 해당 제품은 인허가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함으로 사실상 무관세 샘플 통관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샘플 발송시 수입자와 인허가 부분에 대해 먼저 확인 하시고 무환거래인 경

우에도 샘플의 정상적인 가액을 명시하여 통관, 진행하여야 세관의 수입가액 임의 책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16. 전시회에서 사용할 용도로 샘플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오려고 하는데 부피가 너무 커 핸드캐리가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기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 제도를 이용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조건은 수입된 제품의 물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재반출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판매나 시식 등 제품의 변형이 가능한 행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전시 목적이면 까르네(Carnet)가 더 유용합니다. 즉, 건설업체의 장비, 제조업체의 기계등 고가제품이면서 실제로 사용되어야 하는 화물은 한시적 수입화물 통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단순 전시회 및 바이어 샘플 등은 까르네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네시아는 ATA 협약에 가입된 까르네 협정국으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까르네 신청과 발급은 웹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에 접속하고, 웹화면에서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발급담당자가 검토하고 보정을 요청하거나 발급을 승인합니다. 이용자가 발급수수료를 결제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까르네 통관 시 반드시 발급기관 인장이 찍힌 원본증서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시, 발급신청 후 증서수령까지 하루, 우편수령시, 발급일로부터 3일 정도 소요됩니다.

까르네로 일시 반출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1)해당 물품이 수출 된 후, 재수입 가능한 물품인지, (2)제품 변형없이 수출 될 시 그대로의 형태로 재수입 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까르네 대상 물품에서 제외됩니다.

까르네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국에서 소비되는 물품(식품, 씨앗, 종자, 소비재, 선물 또는 기부목적 반출 제품)
- 위험물/폭발물(무기, 탄약)
-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에너지자원,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 가공 목적으로 반출되는 제품(문양, 절단 등 인공적 처리를 통해 부가가

- 치가 높아지거나 반제품으로 반출되는 물품, 감정용 보석)
-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되는 물품(전시 현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반출되는 물품 등 적정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수량의 상업샘플) 등

까르네는 관세, 부가가치세, 담보금 등을 대체하는 담보증서로 인니 세관이 부과하는 재수출 불이행에 따른 관세 등의 납부를 인니 상공회의소가 보증하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은 별도의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 복잡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Q17. 해외 직구와 역직구를 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이용이 가능한가요?

Cross Border Trade(졸임말로 CBT)란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해외 고객에게 B2C 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즉 해외 직구와 역직구 시장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소비자가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의 제품을 주문하는 경우를 해외 직구, 해외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를 역직구라고 합니다.

B2C 통관 3달러 미만(FOB 기준)의 해외직구는 세금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거래에서 오프라인 거래로 거래 플랫폼 확장을 희망하는 경우, 즉 인도네시아에 오프라인 상점을 두고 판매하고 싶다면, 식품류나 인체에 닿는 제품 그리고 장난감, 영유아제품 등은 식약청인증서(BPOM)나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인증(SNI)이 필수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운영되는 CBT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중 하나인 JD.ID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제품의 약 90%가 CBT로 판매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에 따르면, 물류 배송을 위해서 현지 물류업체를 이용합니다. 해외 판매자와 JD.ID 협력 물류업체를 직접 연결해주며, 물류비용은 입점 수수료와 별개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JD.ID의 경우 물류배송 방법은 물류 업체가 전자상거래용 물품을 해외 판매자로부터 인도받아 인도네시아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제품의 판매자가 제품을

한국에 정해진 물류창고까지 보낸 이후에 물류 업체가 해당 제품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운송이 되면, JX(J-Express) 또는 기타 물류업체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합니다. 보통 항공배송을 이용하는데, 해상운송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JD.ID에서 인기 있는 한국제품에는 패션제품, 뷰티제품, 스킨케어제품 그리고 생활·취미 관련제품이나 식품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 **한국에서의 수출 절차**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입이 활성화되어 관세청에서는 수출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일반 개인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 항목이 간소화됐으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출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세관에 전자상거래업체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된 전자상거래 업체가 등록을 원할 경우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 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대상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으로 200만원이하(FOB기준)의 물품입니다. 간이수출제도로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관세 환급, 부가세 영세율,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인근 세관의 통관지원과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 조건부로 수입 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절차(해외 직구 방식)**

한국의 판매자는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인니 수입 유통사 또는 직접 입점하여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거래당사자 간 거래 계약을 하고, 비용 지불 절차를 거친 후 한국의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한국에 있는 집하지점까지 배송합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유통사는 한국 집하지점부터 인도네시아까지 항공 배송을 통해 제품을 들여옵니다. 통관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제품은 인도네시아 물류 창고에 입고됩니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되면 증빙서류가 물류 창고 담당자로 전달됩니다. 물류 창고 담당자가 제품을 찾아서 포장하고 JNE, J&T express, SICPEAT과 같은 물류 택배업체를 통해 최종 구매자에게 배송합니다. 유통사가 입점한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직접 협약을 맺은 지정된 물류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무부령 No 272/PMK.04/2015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로 내수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에 집중해왔으나, 개정 법안인 재무부령(PMK) No.28/2018을 발표함으로써 보세 물류 창구 운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2기의 보세물류 창고 분류는 대규모 산업체 PLB, 중소기업체 PLB, e-commerce(전자상거래) PLB, 기본상품 PLB, 항공 수화물 허브 PLB, 부유식 저장 PLB, 완제품 PLB등으로 분류됩니다.

* PLB : 보세물류창고

재무부령(PMK) No.28/2018 제 4A조에는 전자상거래 보세물류창고는 오직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만 활용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보세물류창고 운영업자와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인니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제품에대한 세관의 세무감사 및 제품 량 일치여부, 품목과 해당 관세 일치 여부, 수출입 규정 준수 여부, 소득/지출/재고저장 등에 대한 적정 보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입관세는 수입이 세관에서 신고되는 즉시 책정되며, 제품의 수입 가치 및 세법 분류는 보세 물류 창구로부터 물품이 출고되었을 때 시행되며, 해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체는 제품의 수입 규모와 보세물류창고 이용 혜택 등을 따져보아 보세물류창고의 이용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특히거래 규모가 클수록 물류비용 감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Q18.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원자재 수출입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 법적 배경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자원 부국’ 인도네시아가 2022년 1월 석탄에 이어 5월 팜유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등 주요 원자재 수출 제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전기배터리의 재료인 보크사이트와 구리 원광 수출 금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자재 단순 수출국에서 원자재를 가공한 완제품 및 반제품 수출국으로의 변환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는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종종 취해왔습니다. 2019년 말에는 니켈 원광 수출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니켈은 세계 공급의 25%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니켈 원광 가격이 급등했고 배터리 생산업체들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공장설립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석탄 수출 2위국인 인도네시아는 올해 1월 석탄 수출 전면 금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석탄 생산업체들이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는 자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 물량을 늘리면서 인도네시아 전력난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5월에는 내수 식용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 팜유 및 원료 수출을 중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원광 수출을 중단한 이후 오히려 관련 수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니켈에서 거둔 성공이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금, 등 다른 원자재에도 적용하기 원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정부의 원자재, 특히 광산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수행됩니다. 원자재 수출 금지로 인도네시아가 주요 원자재 생산국이 되어 이들 원자재를 활용한 파생상품 수출을 확대할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원자재 수출 금지로 해외에 수출되는 품목이 더이상 원자재가 아닌 반제품이나 완제품이 되어 상품에 부가가치가 붙는 장점을 갖습니다. 또한 고용이 증가하고 세금 수입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세(FTA 활용 포함)]

Q19.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율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인도네시아 관세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는 1989년부터 HS 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

개에서 9,100개(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체계가 되어 있는데, 2006년 이후 한-중-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아세안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년), 일-아세안 FTA(2008년)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세법으로 HS 10단위 체계에서 8단위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HS코드 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수는 11,522개로 2017년 대비 5.6%가 증가하였습니다.

● 관세율

▶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Q20. 택배와 같은 탁송 화물을 이용하면 어느 세금이 부과되나요?

탁송화물(consignment goods)이란 고객이 회사에 운송을 신청한 화물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에서 정의하는 탁송화물(barang kiriman)은 우편분야의 법적 규정에 따라 우편서비스 운영자를 통해 발송되는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우편물,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의 거래방식으로 배송되는 택배, 소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탁송화물 면세한도 하향에 관련된 탁송화물에 대한 소비세 및 내국세에 대한 재무부령 개정령인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No.199/PMK.010/2019)를 2019년 12월 31일에 공표하고, 이를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수입 사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판매세의 징수절차와 수입관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 시행세칙(No231/KMK.03/2001), 소비세 면제 절차에 관한 재무부령(No34/PMK.04/2010), 배송품, 수입, 기타 영업활동과 관련한 선납법인세(PPh 22 조세)에 관한 재무부령(No34/PMK.010/2017) 등을 개정한 법이며, 재무부령 2019년제199호 제정을 통해 탁송화물 수입에

관한 재무부령(No182/PMK.04/2016)이 철회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따르면, 탁송화물 면세한도를 파격적으로 낮춘 이유는 첫째, 국내외 배송 물품에 대한 동등한 조세제도 적용, 둘째,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상품의 급격한 증가,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시장을 상대로 동일한 조세제도 적용, 넷째, 현지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령 2019년 제199호를 통해 기존법에서 주로 개편한 내용은 ① 탁송화물 관세면제 한도를 미화 75달러에서 미화 3달러로 하향 조정, ② 미화 1,500 달러 이내 탁송화물에 대한 선납 소득세 미징수(일부품목 제외), ③ 가방·의류·신발류에 대해서는 과세특혜 제외, ④ 담배에 대한 소비세 면제 한도 조정 등입니다.

탁송화물 금액 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입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건별 탁송화물 수입세율

조건	수입관세	선납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1) 탁송화물 금액 3달러 이하				
(2) 담배 : 필러 최대 40개비, 시가 최대 5개, 일명배 최대 40g 한도, 기타 담배 최대 40g 한도((세분화) 날개 형태 20개, 껍술 5개, 액체 30밀리리터, 카트리리지 4개, 기타 50그램(밀리미터))	0%	0%	10%	-
(3) 우유: 최대 350ml의 경우				
3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 가치 탁송화물*	7.5%	0%	10%	-
1,500달러 초과 탁송화물	MFN	세관 결정	세관 결정	PIB
가방(HS Code 4202)	15~20%	7.5~10%	10%	-
섬유/의류 제품(HS Code 61, 62, 63)	15~25%	7.5~10%	10%	-
신발류(HS Code 64)	25~30%	7.5~10%	10%	-
서적(HS Code 4901, 4902, 4903, 4904)	0%	0%	0%	-

자료원 : No 199/PMK.010/2019,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2020.1)

* 주: 3달러 초과 1,500달러 이하 가치 탁송화물에 대한 선납법인세(10%, NPWP 미소지 20%) 미징수로 탁송화물에 대한 통합세율은 종전 약 27.5% 또는 37.5%에서 약 17.5%(관세율7.5%, 부가세 10%)로 인하

상기사항 외 전자상거래 물품 등 탁송화물 관련 참고 하실만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수입세율 계산 방법

- 1) 과세가격(Nilai Pabean) 산정 방식 → CIF 가격(제품 가격+국제운송비용 +보험비용) X 세금 환율*
- 2) 수입가격(Nilai impor) 산정 방식 → 과세 가격 + 수입관세(BeaMasuk)
- 3) 수입관세(Bea Masuk): 조건별 탁송화물 수입관세 X 과세 가격
- 4) 부가가치세(PPN) : 수입가격 X 10% **
- 5) 선납법인세(PPh 22) : 수입가격 X 선납법인세율

* 세금 환율은 매주 수요일 재무부 산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https://fiskal.kemenkeu.go.id/dw-kurs-db.asp>

** 일반 적용 세율(정률)로 세법에 따라 예외 적용될 시 면세 등 타 세율적용

탁송화물 규정 관련 기타 참고사항

● 탁송화물의 배송, 하적, 저장 등에 관한 내용

- 세관외의 지역에 위치한 물류 사업자는 화물 목록 형태의 신고서를 세관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화물 목록에 등재된 탁송화물의 하적(unloading)이 허용되면 신고자는 등록번호를 수령하게 됨.
- 폐기 처분 승인이 난 탁송화물에 대해서는 임시 저장구역(TPS)에 적재 가능함.

● 세관에서 탁송화물을 반출하는 과정

- 수입된 탁송화물은 임시 저장구역(TPS)에 저장되며, 세관 승인 이후에만 반출이 허용됨.
- 수입 탁송화물은 개인사용, 임시수입, 인도네시아내 거주 고객대상 발송, 보세창고 저장, 재수출 등의 목적으로 TPS에서 주로 반출됨.
- 개인 사용 목적의 탁송화물의 경우, 서한 또는 서류의 형식을 갖춘 탁송화물 목록과 탁송화물이 배송업체에 의해 세관을 거쳐반출이 됨.
-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화물 운송장을 세관 당국에 제출하면 탁송화물이 반출될 수 있음.
- 만일 탁송화물의 금액이 1,500달러를 초과하고 수령자가 법인인 경우와 수입세 납부기한 연장과/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탁송화물의 경우, 임시수입의 경우, PIB(상품수입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임시수입의 경우, 임시수입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다른관세구역으로 배송되는 경우 최초의 임시 저장 구역(TPS), 도착 예정인 임시 저장 구역(TPS), 운송 번호, 출발/도착일, 패키지수 및 종류, 제품

식별 번호, 화물의 총 무게(gross weight) 등의 운송 정보를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함.

- 탁송화물이 보세 창고에 저장돼있는 경우 이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반출해야 하며, 재수출 과정의 경우 하역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할 수있음.

● 행정처분, 제재 조치 등

- (소비자) 소비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또는 조세법에 의거해 관세 납부, 범칙금, 그 밖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
- (배송 서비스업자) 탁송화물사업 승인 철회, 관련 정부 당국에 우편서비스 운영사업 철회 요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전결의 행정처분

Q21. 인도네시아는 수출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료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같은 제품들을 타국으로 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하신 후, 인도네시아 관세편람 (BTKI, 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을 통해 관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편람에 수출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수출세가 없는 상품입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PO, 목재등의 경우 월 별로 수출세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준단가(export standard price)가 변경됩니다. 수출세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기준 단가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월 해당 단가는 하기 관세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부 사이트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 관세청 사이트 : <https://peraturan.beacukai.go.id/index.html?page=jenis/1/undang-undang/1.html>
- 무역부 사이트 : <http://jdih.kemendag.go.id/peraturan>

참고로, 수출 후 면장 정정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사후 수출 면장 정정은 불가합니다. 수출 후 가격 조정이 되어 추가 차액이 발생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에 추가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례가 보고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면장상 수출 가격에 대한 소득세 납부와 추가 발생 차액에 대한소득세 납부를 분리하여 정리하면 추후 수출업자 입장에서 감사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로부터 확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Q22.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 활용 가능한 FTA 조약은 무엇인가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관세 유지품목의 경우는 일반 관세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간혹 석유화학제품 등 일부품목은 한-아세안 FTA 세율보다도 일반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은 불요합니다. 원산지 증명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일반 관세율(MFN)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대응세율

FTA 체약 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 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선적직후(선적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소급기간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의 경우, C/O가 “수출 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 소급발급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한-인니 CEPA가 발효되어 적용될 시에는 “선적 전이나 선적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 소급 발급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선적일부터 소급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근무일” 기준, 한-인니 CEPA에서는 “달력상의 날짜”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관련한 모든 적절한 서류제출이 가능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아세안 FTA vs. 한-인니 CEPA 차이점 비교 〉

구분	한-아세안 FTA	한-인니 CEPA (안)
발급방식	•기관발급	•기관발급, 차후 자율발급으로 전환 * 발효 2년 이내에 자율발급을 위한 규정/서식 협의, 발효 10년 이내에 자율발급 채택
C/O방식	•종이 C/O	•종이 C/O와 전자 C/O를 모두 채택
소급발급 기간	•수출시 또는 선적직후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발급되지않은 경우 * 선적일 포함	•선적 전, 선적시, 선적일로부터 달력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않은 경우 * 선적일 포함
제3국	•Third country	•Remark 란 기재
송장	invoicing 란에 체크 표시	

PSR 규정 방식	• 별도로 규정하는 HS 코드외에는 공통규정 (CTH or RVC40)	• HS 코드별로 PSR 규정
C/O PSR 약어	• 4단위 세번 변경이 아닌 세번 변경기준은 CTC로, 부가가치기준은 RVC%로 기재	• 세번 변경기준 CC, CTH, CTSH로 기재,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인 경우 BD, 집적법인 경우 BU로 기재
사후적용	• 사후적용 규정 부재	• 협정문에 사후적용 언급,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규정
원산지 누적	• 他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을 원산지 재료로 활용 가능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독자적인 협정이므로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 재료로 활용 불가

Q23. FTA 특혜 세율보다 기본 세율이 낮으면 FTA를 꼭 이용 할 필요가 없나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라 2008년 9월 10일부터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상호대응세율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관세 유지품목의 경우는 일반 관세를 적용받기도 합니다. 간혹 석유화학제품 등 일부품목은 한-아세안 FTA 세율보다도 일반관세율이 낮은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은 불요합니다. 원산지 증명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일반 관세율(MFN)이 부과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대응세율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 할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가 자국산업 보호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있는 품목(민감품목)중 당해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 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가 협정에서 아세안측에 약속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세안 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Q24.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과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소급 기간에 대해서 한-아세안 FTA의 경우, C/O가 “수출시 또는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 소급발급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편, 한-인니 CEPA가 발효되어 적용 될 시에는 “선적 전이나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달력상의 7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 소급발급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선적일부터 소급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근무일” 기준, 한-인니 CEPA에서는 “달력상의 날짜”인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관련한 모든 적절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아세안 FTA vs. 한-인니 CEPA 차이점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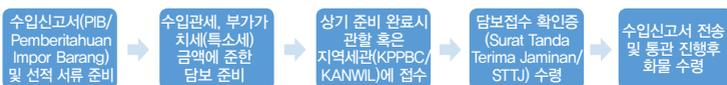
구분	한-아세안 FTA	한-인니 CEPA (안)
발급 방식	• 기관발급	• 기관발급, 차후 자율발급으로 전환 * 발효 2년 이내에 자율발급을 위한 규정/서식 협의, 발효 10년 이내에 자율발급 채택
C/O 방식	• 종이 C/O	• 종이 C/O와 전자 C/O를 모두 채택

소급 발급 기간	•수출시 또는 선적직후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 포함	•선적전, 선적시, 선적일로부터 달력 상의 7일 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선적일 포함
제3국 송장	•Third country invoicing 란에 체크 표시	•Remark 란 기재
PSR 규정 방식	•별도로 규정하는 HS 코드외에는 공통규정 (CTH or RVC40)	•HS 코드별로 PSR 규정
C/O PSR 약어	•4단위 세번변경이 아닌 세번변경 기준은CTC로, 부가가치 기준은RVC%로 기재	•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로 기재,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인 경우 BD, 집적법인 경우 BU로 기재
사후 적용	•사후적용 규정 부재	•협정문에 사후적용 언급, 국내법 으로 정하도록 규정
원산지 누적	•他 아세안 국가의 원산 지 물품을 원산지 재료 로 활용 가능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독자적인 협정이므로 타 아세안 국가의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 재료로 활용 불가

**Q25.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그렇다면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혹은 환급)를 해 주는데 이를 KITE 제도라고 합니다. 수입 통관 전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유예(Bank Guarantee혹은 Custom Bond 예치)를 받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수입통관시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환급을 받을수도 있으나 공히 KITE 승인을 받은 법인에 해당이 되며, KITE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체는 납부한 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KITE 제도를 이용한 수입 실무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입된 화물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합니다.
담보 회수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KITE 제도로 해외에서 화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 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화물통관 승인증명서)원본
-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 B/L 혹은 AWB 원본
-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국내 보세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 BC2.5 Copy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 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KB Copy
- Purchase Order
-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 B/L 혹은 AWB 원본
-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해외수입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국내 보세법인에 수출한 경우**

-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 SSPCP (수입제세 납부 영수증) 원본
- 세관원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화물통관 승인증명서)원본
- BC2.4 원본
- Sales Contract 원본
- Invoice Copy
- Purchase Order

상기에 준하여 서류 준비 후 관할/지역세관에 접수후 접수증을 수령합니다. 이후 관할/지역 세관에서는 환급 심사하며 승인되면 세관에서는 SKPPF, SPMK 발급 및 승인후 담보를 회수합니다.

면세 및 환급대상 제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유탄유, 연료 등의 소모재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Q26. 상호대응세율제도 정의가 무엇이고 언제 활용하는 제도인가요?

상호대응세율제도는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 할 경우에 수입국도 FTA 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민감품목)중 해당 품목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향후 국내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69개 품목에 대해서는 FTA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MFN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승용차를 ‘민감품목’으로 분류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4개국이 우리나라에 승용차를 수출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4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하여는 FTA 특혜관세율 0%가 아닌 MFN 관세율 8%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는 우리나라도 아세안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사이클에 대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FTA 특혜관세율인 3%가 아닌 MFN 관세율 8%를 적용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 관세율이 5%이므로 우리도 5%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호대응세율제도는 향후 아세안 측의 관세 조기 인하를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수입이 급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이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아세안 측의 관세 조기 인하를 유도해 FTA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거래(수출금융)]

Q27. 위탁 판매 수출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으지요?

한국의 수출자가 인도네시아의 수입자(통관 및 비용 정산 대행업체)와 거래하며, 실제로 물건은 인도네시아 국내 구매자(최종바이어)의 창고에 보내고, 통관과 정산은 모두 대행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최종구매자는 대행 체 측에 돈을 지불하며, 대행업체에서는 해당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종 구매자가 대금결제를 한국의 수출자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대행사를 통해 하는 경우로, 상호간 계약서 내용만 확실하게 해 둔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28. 인도네시아 내륙에 상품을 공급하는데 루피아가 아니라 달러와 같은 외환으로 결제대금 수취가 가능한가요?

인도네시아 공장 a와 제조 위탁계약 체결 → 물품을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업체 b에게 납품하는 경우, 대금 결제 시 인도네시아 업체 b로부터 외환 수취는 불가능합니다. 위탁계약에 의거하여 공장 a와 한국업체에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물품 대금 송금의 경우 현지 진출 한국 은행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용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한국계 은행 정보〉

▶ 하나은행 : PT Bank KEB Hana Indonesia

TEL : +62-21) 5220222, 50811111

FAX : +62-21) 50811123

주소 : Mangkuluhur City – Tower One,

Jl, Jend. Gatot Subroto Kav. 1-3, Jakarta 12930

- ▶ 신한은행 : SHINHAN BANK INDONESIA
전화 : +62-21) 1500 881 (Shinhan Bank), +62-21) 1500 336 (Shinhan Credit Card)
사무실 직통전화 : +62-21) 2975 1500
주소 :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2 Lantai 30 dan 31
Jalan Jenderal Sudirman Kav. 22-23, Jakarta Selatan 12920
- ▶ IBK 기업은행 : IBK Indonesia
전화 : +62-21-5790-8888
주소 : Wisma GKBI Suite UG-01, Jl. Jend. Sudirman No.28, RT.14/RW.1, Bend. Hilir,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210

Q29. 한국 수출 업체가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공장으로 수출한 후, 한국 수출 업체와 보세공장이 먼저 결제를 하고, 인도네시아 내국 바이어가 보세공장으로 대금납부 할 수 있나요?

인니 보세공장은 수출 목적으로 보세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해야 하지만, 로칼 바이어에게 판매 할 때는 면세받은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로칼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컬판매가 수출 또는 국내 보세업체에 판매가 더 많을 경우, 보세 허가는 반납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세 업체가 수출이 아닌 내수 공급시에는 내수 판매 법령에 준하여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 수출실적도 감사 받아야 하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절차적인 복잡함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나 세관에서 인정해 줄 지 여부도 엄밀히 확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세관/세무서에 확인 작업을 먼저 하시고 거래 진행여부 결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Q30. 물품대금 수급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바이어를 상대로 신용장 개설을 요구 할 계획인데 인니에서는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용장(L/C)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업체의 신용도와 담보를 확인한 이후 개설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는 거래 은행과 협의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수료의 경우는 은행별로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설 절차는 거래 은행을 가면 거의 대부분의 시중 은행은 신용장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용장 정의 및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란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은행에서 발행하는 증서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반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경우,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지급 약속서입니다.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신용장은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이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약속하는 약속증서입니다.

● **신용장을 이용한 수입국(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절차**

계약체결 → 수입승인 → 수입신용장 개설 → 운송수단 수배 및 해상보험 가입 → 선적서류 검토 및 대금결제 → 수입신고(통관)→ 물품반출

● **유의사항**

신용장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익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신용장 상 조건들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하였다가 선적이나 매입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1. 대금 수령시, 인도네시아 구매 업체에서 한국에 있는 판매 업체에게 루피아(IDR) 송금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법과 관련하여 해당 송금사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BI No 18/19/PBI/2016 Year 2016 의 제 18조(Pasal 18: Bank dilarang transfer rupiah ke luarnegeri)에 보면 ‘인도네시아의 은행은 루피아화를 직접 국외로 송금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먼저 IDR을 USD로 변환한 후 송금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Q32. 바이어의 수출대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거래 중인 바이어와 종종 수출대금 미납 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일단은 업체를 통해 납부금 송금을 독촉합니다. 그래도 되지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황별 고려 가능 조치 사항〉

1. 바이어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속 할 의지가 있는 경우
 -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연락을 이어나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들이 보기보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비즈니스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레터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변호사(법률전문가)를 통해 상의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2. 바이어와의 관계를 종결하고 싶은 경우
 - 법적인 중재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클레임하는 방법은 첨부에 안내 드리는 KOTRA 법률 자문위원을 통해 자문을 구하면 됩니다. KOTRA 소개로 연락하셨다고 하면 초기상담 무료로 가능합니다.
 - 혹시 수출보험을 사전에 가입이 되셨는지요. 그 경우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미수금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면 될 것입니다. 수출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는 하기 담당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사전에 하지 않았으나 손실을 어떻게 커버 받을 수 있는지 무역보험공사 국외보상채권부 국외채권팀(연락처 : 02-399-6592)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바이어 장기 연락두절 등 범죄행위로 의심 될 경우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고가 되는 경우는 드물고 신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낮은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계신분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워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과에 민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이어와 다시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업체는 현지 유통업자나 수입업자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Q33. 인터넷을 통해 한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거래를 제의합니다. 무역 사기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인터넷 공간은 기본적으로 무역사기가 일어나기 쉬운 공간입니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자가 인도네시아 바이어를 사칭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역 사기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법무인권부사이트(ahu.go.id)를 통해 해당기업의 실존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에서 알게된 업체와 연락을 취할 경우해킹 위험이 있는 상용메일이 아닌 보안처리가 된 회사메일을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갑자기 계좌가 변경되었다며 다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무역사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 **거래처 주소**

- 인보이스상에 거래처 주소가 정확히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기업이라도 해당부서를 언급한 층과 건물명은 주소상에 반드시 명시돼 있습니다.



자료원 : (좌)인도네시아 주요 온라인 마켓 tokopedia 및 가공식품 대기업 Indofood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인니어를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간단한 영어는 인니 업체 담당자도 구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거래 대상 기업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 만일 “Maaf, nomor anda hubungi tidak ada(마아프, 노모르 안다 후

붕이 떠닥 아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들리면 해당 홈페이지는 사기를 위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인보이스 및 홈페이지 상 전화번호 및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기업명이 수신자로 돼 있는지, 계좌번호 소재 도시가 법인 소재 도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Q34. 무역 사기 업체한테 송금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무역 사기라고 인지하셨다면 인보이스에 표기된 인도네시아 거래 은행(계좌번호를 발부한 은행)에 즉시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후 거래 은행에서는 해당건의 사건을 사기 의심사건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발부합니다. 해당 은행은 의뢰자(대리인 포함)의 신분증 사본, 송금증, 인보이스, 한국 경찰서 신고 확인서, 인도네시아 경찰서 신고 확인서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서류가 완벽히 구비된 후 은행에서는 검토를 실행합니다. 은행의 송금 사기 처리 부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현지은행측 수신계좌 차단 및 해당 자금이 수신계좌에 있는것이 확인 될 경우, 자금역류 및 피해자로 재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 직후여야 송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송금이후 상당 시일이 경과할 경우 송금한 금액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거래 중이거나 공인된 거래처가 아닌 경우, 제품 또는 대금거래 및 송부 전 및 직후에 거래처와 연락을 직접 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 담당자 이름, 직위, 핸드폰과 같이 바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의심이 가나 인도될 제품에 대한 송금을 진행했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하는것이 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송금 전 전화 연락을 하였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KOTRA는 형사사건을 직접 또는 대리료 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와 관련해서 대사관의 영사과 및 한인회에 접촉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역 사기 피해 관련 유관기관 연락처〉

문의처	담당 소관 업무	접수 방법
KOTRA	(상담)피해사례 접수, 확인 및 해결 방법 안내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게시판 (www.kotra.or.kr) - 대표번호 : +62-21-574-1522 - 이메일 : KOTRA 온라인 무역 투자상담 게시판
한국무역보험공사	(상담 및 실행)거래처 신용도 조회 업무	- 대표번호 : +62-21-570-5565 - 이메일 주소 : yjc0347@ksure.or.kr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실행)영사 업무 (경찰 영사 포함)	- 영사과 대표전화 : +62-21-2967-2580 - 당직전화 연락처 : +62-811-852-446 (16:30 이후부터) - 대표이메일 : koremb_in@mofa.go.kr
재인니 한인회	(상담)민원 상담 및 실무적인 팁 제공	- http://www.innekorean.or.id/hanin/ - 대표번호 : +62-21-521-2486 - 이메일 : innehaninhoe@gmail.com

[수입을 위한 인증 및 규제]

Q35. BPOM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식약청 인증이 BPOM 인증으로도 통용됩니다. 대상품목에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강 보조식품), 식품(일반가공식품) 화장품이 있습니다. 통상 화장품, 식품의 인증이 2개월~1년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품 전통의약품 및 건강 보조제품의 경우 길면 2년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일반 수입유통업체가 등록 가능 범위인 통상 화장품, 일반 가공식품의 인증이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 보조제품의 경우 길면 2년여 이상의 시간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등록 허가 요건사항을 사전 준비와 요구조건 사항을 충족 시에는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일반 가공식품 경우 평균 3~4개월, 전통 의약품 및 건강 기능식품의 경우 6~8개월내에도 완료되는 점을 참고 하여 인도네시아 식약청 기준에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일반가공식품 : <http://e-reg.pom.go.id/>
화장품 : <https://notifikos.pom.go.id/>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 <https://asrot.pom.go.id/asrot/> 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식품 (일반 가공 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의 절차를 받아 보통 3~4개월에 서류적 보완 보충 필요에 따라 6~12개월도 소요됩니다.
- 등록 접수 비용 : 일반 가공식품은 Rp.300,000 또는 카테 고리에 따라 Rp.500,000를 식약청에 심사등록비로 납부되어야 심사 진행 가능하며, 제품의 광고 기능성 표기가 필요시 광고 대상 기능성 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Rp.3,000,000의 비용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 주요 유의사항 : 해외 제조사의 식품안전 및 위생 관리사항을 점검 직접 점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로 제조사의 HACPP 또는 ISO22000의 사본을 필수 제출하여 심사 평가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시험검사 성적서의 준비는 제조사의 자가 시험 성적서용도 필요 하지만 외부 시험 검사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의 시험 검사 성적서가 추가 제출되어야 하며, 이때 식품 카테고리별 주요 의무 미생물 및 중금속 검사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국가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시험검사 기관에 의뢰 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BPOM 2019년 22호 규정의 개정에서 일반가공식품의 영양성 분표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2월 10일 시행령(No.HM.04.52.522.02.20.289)에 의거 자국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의무검사 제외대상 품목은 현지에서 생산한 커피, 차(분말 및 티백 제품 포함), 미네랄워터, 허브 제품, 양념류, 조미료이며, 해외 제조 수입 제품은 예외 없이 모두 의무화.

No	Name(항목)	Max. Limit
1	Lemak total (지방)	69 g/ day
2	Energi / Kalori (열량 / Kcal)	2150 Kkal(Kcal) / day
3	Protein (단백질)	60 g / day
4	Karbohidrat total (총 탄수 화물)	325 g / day
5	Lemak Jenuh (포화 지방)	20 g / day
6	Natrium (나트륨)	1500 mg / day
7	Kolesterol(콜레스트롤)	<300 mg/ day

*관련규정 : 영양성분 검사 항목 규정 식품의약청(BPOM) 규정 2019년 22호 (의무 2020.2.10.)

●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식품의 등록 절차와 유사하나 허가 대상이 일반식품 보다는 그 제조의 관리와 제조의 기술 안정성, 제품의 기능성 검증자료등의 심사가 매우 어렵고 그 요구사항도 많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심사기간은 서류적 요건의 충족이 완비 될 시 6개월 이내에도 가능하지만, 심사요건과 평가항목이 많은 관계로 추가 서류보정 및 요구 자료로 인하여 평균적으로 1여년이상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 등록 접수 비용 :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Rp.5,000,000 또는 Rp.10,000,000 이며, 전통의약품의 경우 Rp.15,000,000, 신 전성분 구성의 제품의 경우 Rp.15,000,000입니다.
- 주요 유의사항 : 특히 제조사의 등록절차에는 필수적으로 GMP사본의 공증이 제출되어야 제조사의 등록을 선행 후 개별 제품의 등록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기능 식품 제조용 GMP의 경우 추가적으로 SMF(site master file)을 제출받아 WHO 기준 적합 여부를 따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PICs GMP(제약) 보유 제조사일 경우 바로 승인을 받아 개별제품 접수와 심사가 가능합니다.

Stability Report, 즉 안정성 평가 보고서로 인니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가속성 조건에서 Acceleration test : $40^{\circ}\text{C} \pm 2^{\circ}\text{C} / 75 \pm 5\% \text{RH}$ 에서 6개월 최소 자료가 보고서로 작성제출 되어야 하며, Long-term Test : $30 \pm 2^{\circ}\text{C} / 75 \pm 5\% \text{RH}$ 관련, 활성 재료와 보조제 또는 첨가제로 구성에 활성 재료의 대상은 재료별 Assay 사항과 검사 결과가 범위안에 있어야합니다. 즉, 안정성을 유지하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화장품**

- 인허가의 절차 및 소요 기간 : 일반 가공식품과 유사하며, ① 수입사의 등록(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의 등록, ③ 개별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심사 의구성으로 포장 디자인의 심사가 사전평가가 아닌 등록후 사후 관리에서 점검 평가가 됩니다.
- 등록 접수 비용 : 인허가 기간은 제조사의 등록 업무에 1개월 이내, 제품의 심사 4주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식약청의 업무 일정에 따라 추

가 소요도 됩니다. 현재 평균 신규등록의 경우 3개월 이내 완료되고 있으며 이는 화장품의 경우는 서류적 기본요건 사항으로 제품의 명칭, 재료의 화장품 사용가능 기준 적합 부분만을 우선 기준으로 심사하여 빠른 허가를 내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후 관리제에 따른 화장품 관리 서류의 비취관리가 허가유지 등록에 매우 중요합니다.

- 화장품의 등록 비용 : 아세아, 유럽, 미주 등으로 지역별 구분하게 되며, 한국은 아세아에 포함되어 구분 코드 NA 로 등록 접수 납입금은 Rp.1,500,000입니다.
 - 주요 유의사항 : 화장품의 허가 심사가 비교적 다른 품목에 비하여 간소화되어 있는 편이나 신재료 등록이 필요하거나, 제품의 명칭에 대한 평가와 그 기능성의 입증 자료 요구에 따라 심사 기간이 추가 될 수 있는 점도 참고 되어야 합니다.
- 제품의 시험 성적서의 화장품 유형에 따른 미생물 및 중금속검사 항목과 그 기준이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보편적으로 인도네시아 시험 인정 기관에 의뢰 하시어 검사받는것이 업무의 편리성과 비용적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후속 관리로는 식약청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완료된 제품에 대한 DIP (data information product)* 서류 관리 부분에 대해 감사 받게 됩니다.

〈DIP 구성서류〉

제품 정보 서류집으로, Data information product의 약자입니다. 해당 제품별 제품에 사용 전성분 재료에 대한 스펙과 제조 공정 등의 기술 서류, 허가서 사본, 포장 디자인, 라벨 표기사항 등을 일괄 순차적 정리하여 제품별로 편철해야 합니다.

(참고 : 식약청 인증에 관한 식약청장령 BPOM No30/2017의 주요 내용)

● 수입 요구 사항

- 수입식품 및 의약품에 유통허가 (Izin Edar)를 받아야 함.
- 유통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수입업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 승인(SKI, Surat Keterangan Impor)을 받아야 하고 수입승인의 신청 횟수는 수입시 1회이며 자유무역지대, 자유항지대, 보세공단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적용됨.
-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의 최대

1/3이 남아있어야 하고 백신, 면역 혈청, 항원, 호르몬, 혈액 관련 제품, 건강을 목적으로 한 발효제품등 생물학적 제품의 경우 최소 9개월 이전에 수입되어야 하며, 일반 가공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의 최대2/3가 남아있어야 함.

- 해당 품목군: HS 코드 04, 13, 16, 17, 18, 19, 20, 21, 22, 30, 33, 34, 38

● 등록 절차 및 필수 서류

- 의약품 및 식품의 수입은 대리인의 유통 허가권을 보유하는 자만이 가능
- 유통 허가증을 보유한 제약산업체는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 승인을 득한 후에 다른 제약산업체 또는 도매업자를 수입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SKI 신청 업자는 식약청 웹사이트(<https://e-bpom.pom.go.id/>)와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www.insw.go.id)를 통해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함.
- 수입승인(SKI) 신청 구비 서류
 - 수입승인 신청자는 수입 업체 사장으로부터 위임장 원본을 득해야 함.
 - 수입 업체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원본
 - 수입자 고유등록번호(API)·납세자 번호(NPWP)·사업자 등록증(SIUP) 사본
- 수입승인(SKI) 신청보조서류
 - 유통승인 공식 레터 (NIE-Nomor Izin Edar)
 - 성분분석증명서 (COA-제조사의 자가 시험 증명서)
 - 송장
 - 납세 증빙(NPWP)
- 성분분석 증명서에는 제품명, 조항에 따른 제품 검사결과 분석방법, 제품 생산날짜 코드(batch number), 로트 번호(lot number) 생산 코드,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함. 또한 시험 검사 항목은 각 제품의 카테고리 별 의무 시험 검사항목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이 충족 되어야 함.
- 백신 제품 수입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백신이 각 진입에 대해 승인된 원산지 기관의 기관으로부터의 배

치 또는 로트 공개 증명서 및 제조자가 발행한 요약 배치 또는 로트 프로토콜

- 서류를 구비한 후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3개월 안팎임.

● 수입 승인 사항

- 서류는 제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최대 3일 이내에 평가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음. 신청자가 기한을 초과하면 이전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돼 신청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 인증서는 신청자나 INSW(Indonesian National Single system Window)가 인정하는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될 수 있음.
- 특히 e-bpom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의약품 통제센터 및 식품에 대해 수입 승인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식약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뤄짐.

● 서류 관련 사항

- 의약품 및 식품수입에 대한 서류는 수입 승인을 신청하는 의약품 및 식품 유통 허가증 소지자가 향후 최소 3년간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 BPOM은 수입 승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불시에 표본 조사가 가능

● 재수입

- 인도네시아로 의약품 및 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입을 이행해야 함.
- 해당 제품 재수입시 의약품과 식품 원자재의 인도네시아산 여부 및 재수입 사유를 명기한 수출증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해당 수출 증명서는 식약청 또는 관련 대행기관에서 발행돼야 함.

● 통관 후 관리 제도 (2018년 2월 1일부 신설)

- 식약청(BPOM) 인증은 BPOM No 30 year 2017을 통해 SKI를 SKI Border 와 SKI Non-Border 2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작년에 발표된 법령에 하나로 통합한 것과는 다른 부분임.
- 또한 BPOM No 4 year 2017에는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해 나열이 되었으나, BPOM No 30 year 2017에는 수입 제한 리스트가 수

록되어 있음. 통제 시점 (세관 통관 전 또는 후)을 기준으로 수입 품목이 나뉨.

- SKI Border : 제약, 백신, 허브의약품 등
- SKI Post Border :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약외품(일부), 가공 식품 등
- 무엇보다도 SKI 신청자는 PNB(해외수입내역)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기존법과 변경된 내용임.

Q36. SNI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SNI란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의 줄임말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이 국가 규격은 국제품질보증 ISO 9000을 근간으로 설계됐습니다. 해당 인증은 ISO 등 여타 공인된 국제 표준화 인증과 유사하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SNI를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ISO 인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SNI 인증을 신규로 획득해야 합니다. SNI 강제인증 대상 제품이 아니어서 인증 취득이 불요함에도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SNI 분류는 Type 1a, Type 1b,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ype N 등이 있으며 2019년 4월 2일 BSN 홈페이지 기준, SNI 인증 발급 리스트에 등재된 품목 4,540건 중 거의 대부분은 Type 1b 또는 Type 5입니다. 장난감, 영·유아용품은 Type 1b에 해당하며 양변기, 시청각용 전자제품, 식용 소금, 카카오가루, 라면, 생수, 타이어, 선풍기, 펌프, 파이프 등의 산업용 장비 등은 Type 5에 해당합니다.

인증 종류별로 준수해야 하는 적합성 평가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종류별 수반되는 비용 및 소요 기간은 서로 상이합니다.

SNI 인증 신청은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 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소재 제조업체가 할 수 있으며, 해외업체가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수입 업체 또는 제조사의 대표부(대리점, 지사, 위임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SNI 인증에서 특이 및 유의사항으로는 수입사가 신청 인증받을 경우 1개

제조사에 1개 브랜드가 가능한점 그리고 제조사의 위임사(대표부)가 신청의 경우는 1개 제조사에 여러 브랜드에 대한 인증이 가능한점 유의가 필요하며, 이때 수입은 브랜드별 권리 수입사가 수입 및 유통 가능합니다.

SNI 인증 준비 서류, 소요기간, 발급 비용, 발급 절차는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SNI 인증 기본 정보〉

● 발급 절차

- 1) BSN 웹사이트에 등록된 SNI 인증 표준 목록을 통해 SNI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해당 목록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ispk.bsn.go.id/SNI/DaftarList> 2022년 5월 기준 최신 SNI 의무적용 대상 제품의 목록은 <https://bsn.go.id/main/berita/detail/11826/regulasi-teknis-sni-yang-diwajibkan>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2) 해당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발행해줄 수 있는 시험인증기관(LSPro)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LSPro는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가 인가위원회(KAN)으로부터인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 ▶ KAN의 인가를 받은 LSPro의 종류, 소재지, 인증 진행 가능품목 등은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LSPro
- 3) 수입업자 등 인증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증받은 기업 정관사본, 영업허가(SIUP), 납세자 고유번호(NPWP), 사업자 고유번호(NIB), 특허청으로부터의 브랜드 등록 증명서(상표 출원서 사용 가능)등 요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LSPro는 신청서류의 적합성과 완성도 및 기업에 대한 검토를 실시
- 5) 제조 공정 평가 및 제품 표본을 시험 검사하는 과정을 포함한 관련 운영시스템의 평가
- 6) 닷째와 다섯째 과정에서 수집한 서류와 표본 검사, 제조공정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 7) SNI 인증 발급 및 사후 관리*
 - *사후관리의 경우 인증 발급 후에도 이뤄지는 별도 시험검사에 해당하며, type 1 은 매 선적시마다 배치 당, type 2의 경우 매 년마다, Type 3의 경우 매 6개월마다, Type 4의 경우 1년, Type 5의 경우 1

년마다, N타입은 정해진 기간이 없는 것으로 조회됩니다.

● **준비 서류**

- 초기 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에는 신분증(KTP) 사본, 납세자 고유번호 (NPWP), 영업 허가증(SIUP) 사본, 회사 정관(Akta Pendirian),사업자고유번호(NIB), 브랜드 등록 증명서(Bukti Pendaftaran Merk), 품질 가이드 (Paduan Mutu), 제조 및 유통과정 플로우(alurproses produksi dan distribusi) 등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험검사와 관련된 기술적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며 세부 서류에 대해서는 시험인증기관(LS Pro)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 **소요 기간**

- 모든 서류가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기간은 근무일수 기준 41일이고 이는 시험검사 기간을 제외한 행정 처리 기간이며, 모든 과정이 포함 될 경우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내외가 소요될 수있습니다.

● **발급 비용**

- SNI는 인증 취득 비용은 인도네시아 기업 뿐 아니라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중부 자바에 소재한 TV 조립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한 인도네시아 사업가는 전자제품과 관련, SNI를 취득하는데 3가지 품목에 드는 시험검사 비용이 총 1,350만 루피아이고, 전체 비용은 총 2,820만 루피아가 들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상기 사례는 해당 업체가 직접 인증과정을 진행한 경우로, 국내산 제품에 대한 인증 비용이며, 해외 소재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SNI 인증을 진행하는 경우 3~4배 가량 비싼 것으로 추정됩니다.

☞ 품목별로도 적용 검사 및 모니터링 활동이 달라 SNI 인증 비용에 차이가 있고, 만일 해외 기업이 인증대행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는 것이 최근업계의 의견입니다. 단, 비용은 사례별로 다를 수 있어 대략적인 비용 추산용으로만 활용하며 정확한 비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에 따릅니다.

〈SNI 비용 구성 사례〉

- SNI 번호별 / 브랜드별 인증서 발급비
- 심사비 (서류 심사 및 현장 감사 평가 - 출장여비 제외)
- 시험검사비
- 1년차 이후 연간 유지 등록비

Q37. 할랄 인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신할랄인증 개요

지난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할랄 인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할랄인증 온라인 시스템은 Halal.go.id이며, 현재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사이트 시스템 정비와 평가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보장청의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규칙 시행 준비의 부족으로 할랄인증 의무화는 5년 추가 유예되었습니다. 다만 5년 까지 각산업 분야별 계도기간을 설정 하였으며, 일반 가공식품의 경우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신청이 지연될수 있어 사전 여유를 갖고 인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할랄보장청인 BPJPH와 할랄 심사기관인 LPPOM MUI 측에 확인해 본 바로는 온라인 시스템 준비중에 따라 현재 이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사항 회신에 2~3주가 소요되고 또 접수 등록에 대한 기본적 현안 안만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BPJPH 할랄보장청에 접수하고 국내제조사는 LPH(할랄 심사기관)을 리스트에서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9호 할랄제품보장법 개정안으로 해외 할랄 심사기관(LPH)는 LPPOM MUI, Sucofindo Indonesia, Surveyor Indonesia 3곳이 지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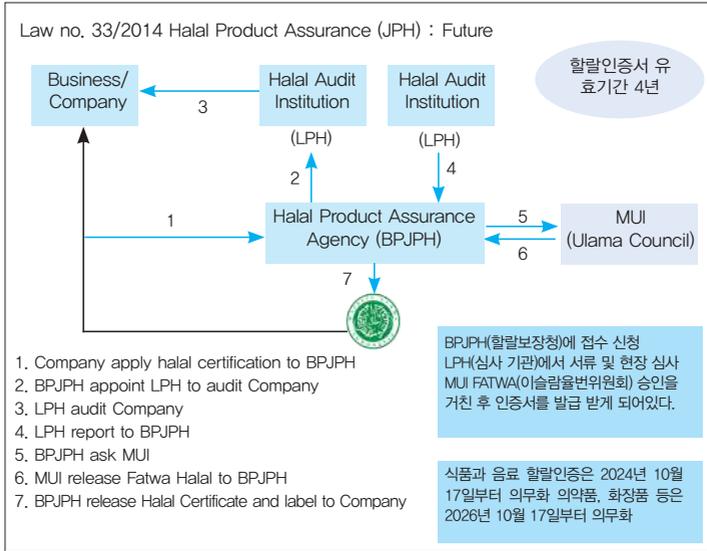
할랄 심사절차의 표준 업무 지침은 MUI 산하 기관이 LPPOMMUI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 해외 제조업체의 심사기관 선택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4월 20일 부로 LPPOM에서는 할랄 인증의 명칭이 certification halal 에서 halal Decree 로 명칭 변경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certification(인증서)의 발급은 BPJPH로 이관이 된 사정으로 간간 협의를 거쳐 조정이 된 사정으로 사료 됩니다. 할랄 인증의 신청은 현재 LPPOM에서 서류 접수를 받기 위하여 BPJPH의 접수절차를 받고 접수 승인 확인서를 발부 받아 이를 해외 인증 심사기관(LPH)에 제출되어야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할랄인증 유효 기간 및 진행 절차

할랄 인증서는 할랄 보장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4년입니다.

〈할랄 인증 인허가 프로세스〉



자료: BPJPH, 임준환 대표 보유

〈인도네시아 할랄보장법의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요〉

● 할랄 보장법 시행령 2019년 31호 개정 주요 내용

- 할랄보장청(BPJPH) 할랄인증 업무 실시
- 2019년 10월 17일부터 할랄보장청(BPJPH)에서 할랄인증발급 시작
- 온라인을 통해서 할랄인증 직접 신청가능
-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
 - * 심사기관(LPH)의 할랄 확인서(Halal Decree)의 유효기간 4년으로 맞추어 개정 되었습니다.

●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 할랄 인증 의무화

- 제품 범위: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할랄인증서의 신청 및 발급 대상 품목은 화장품, 생활 가정 기능성 용품, 미용용품, 가공 식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유통, 도축, 금융 등의 분야를 넘어 생활 활동에 필요한 모든 분야가 해당됨.

- 의무화 시기 :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는 신할랄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식품과 음료 할랄인증은 2024년 10월 17일 이후부터 의무화되고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17일 이후부터 의무화*
- * 다만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종류별로 차등 적용됨(의무 적용 시작 년도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상이)
- * 식품, 화장품,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등급별 차등적용, 의무 적용 시작 년도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상이), 의류 · 헤드기어 (2026년부터), 생활용품(2026년부터) 등 또한 할랄성을 입증받게 됨
- * 계도기간 전이라도 BPJPH를 통해 신 할랄 인증 프로세스진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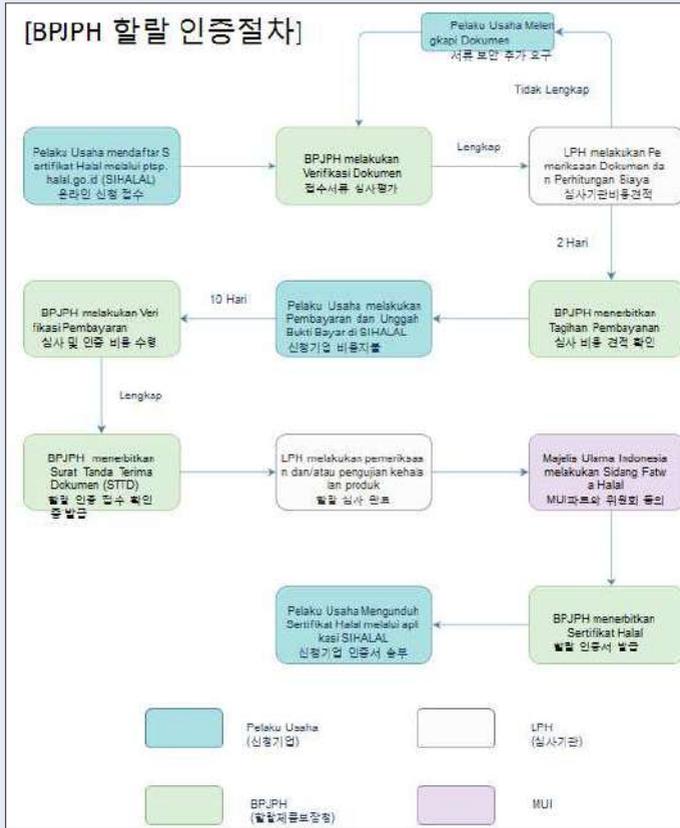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령 2019년 제 26호 32~33조에 세부 품목별 유예기간 상세 명시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외품(OTC)	2021.10.17.~2029.10.17
항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악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그 밖의 비할랄 의약품, 생물제품, 의료기기 등	정의되지 않음

- 하람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인증청(BPJPH)을 대상으로 유효인증 신고 및 등록 의무
- 할랄청(BPJPH) 할랄인증 사이트를 통해 할랄인증 직접 신청 - 신청사이트 : <https://ptsp.halal.go.id/>

● **할랄, 비할랄 제품의 매대 구분**

–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할랄 매대와 비할랄 매대를 구분해판매



- 계도기간 규정에 따라 식품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매대로 구분 할 것으로 전망
- 매대 구분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돼 있어 할랄 미인증 제품에 많은 진출 애로가 예상됨.

● **할랄인증 등록 개념 변경**

- 할랄보장청(BPJPH)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필요없이 별도의 등록 과정만 거치면 된다는 시행령이 있음.

- 한편, 아직 할랄보장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외 할랄인증기관이 없는바 이는 최종기관 선정 심사에 MUI FATWA의 평가와 동의를 받아야 할 것

● **비할랄 라벨링 관리감독 강화**

- 가공식품 라벨에 관한 인도네시아 식약청장령(BPOM)2018년 제31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제품은 아래와 같은 하람 성분 표기 관련 라벨링 준수가 요구됨
- 신 할랄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는 해당 라벨링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질 것임에 따라 이러한 라벨링 법규는 한국의 식약처 규정과도 다소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한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 시 제 2016-149호)]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재료를 표기하도록 돼 있음. 이를테면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취급한 제조시설(원재료 창고 포 함)에서 생산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문제로 인해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함
- 그렇기 때문에 돼지고기 성분이 전혀 없더라도 한국의 법규에 따라 그러한 문구가 이미 부착돼 있는 제품은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 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것

자료 출처 : PT GNF 임준환 대표 기고문

●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인도네시아 할랄청은 새로운 할랄인증로고를 발표**



- * 출처 : (BPJPH Nomor 40 tahun 2022)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신규 할랄인증을 받을 경우 이번에 발표된 할랄인증 로고를 사용해야 합니다.
- * 기존 MUI에서 발행한 할랄 로고는 2026년까지 유효(근거 : 2021년 할랄제품보증 시행에 대한 정부 규정 39호)

Q38. 국산부품 사용비중(TKDN)이 뭔가요?

- TKDN 개념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제도는 인도네시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무역장벽중 하나로, 2009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에 정부프로젝트 및 정부 또는 공공기관 물품·서비스 조달시 지정 품목에 한해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TKDN))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8년 7월 13일에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하고 7월 18일부터 발효된 자국산 콘텐츠 비중을 강화하는 정부규제가 발표되었습니다.(법령 넘버 : PP Nomor 29 Tahun 2018) 이규정에는 제조업자는 반드시 제품 라벨에 국내산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TKDN(자국산 콘텐츠비중 확대)에 대한 주요내용은 산업부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M-IND/PER/2/2011)에 소개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TKDN의 자국산 콘텐츠에는 재화에 사용되는 국내산 원료 또는 부품 비중, 서비스의 국내 서비스 비중, 사업장내 인도네시아인 종업원 비중, 생산 기계의 국내산 비중, 투자 국내기업 자본 비율등이 해당됩니다.

- TKDN 산정 방식 : PERATURAN MENTERI PERINDUSTRI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M-IND/PER/2/2011 TAHUN 2011에 명시되었습니다.

산정 방식은 상품의 경우 원부자재, 투입 노동력, 간접 생산비용 등이 산식에 들어가며, 서비스의 경우 노동, 활용 도구 및 시설, 일반 서비스 등이 산식에 들어갑니다.

TKDN 산출 공식

분류	KDN	KLN	Total	% TKDN
원재료	(1A)	(1B)	(1C)	(1D)
노동	(2A)	(2B)	(2C)	(2D)
제조간접비용	(3A)	(3B)	(3C)	(3D)
생산비용	(4A)	(4B)	(4C)	(4D)

- **국내 부품 비용(Kandungan Dalam Negeri (KDN))**
직접 원재료 비용, 직접 노무 비용, 이외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
- **외국산 부품 비용(Foreign Component Cost or Kandungan Luar Negeri (KLN))**
직접 원재료 비용, 직접 노무 비용, 이외의 해외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용 산출 공식에는 하기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서비스 또는 상품 중 외국산 포함된 경우

$$\% \text{TKDN (4D)}: \frac{4C(\text{총 생산비용}) - 4B(\text{KLN 생산비용})}{4C(\text{총 생산비용})} \times 100$$

(2) 서비스와 상품이 전부 국내산으로 구성된 경우

$$\% \text{TKDN (4D)}: \frac{4A(\text{KDN 생산비용})}{4C(\text{총 생산비용})} \times 100\%$$

- **TKDN 최종 원산지 기준**
 - 원재료 : country of origin에 기반
 - 사업에 사용되는 도구, 시설 등 : 소유권 및 country of origin에 기반
 - 노동력의 경우 국적에 기반
- 인도네시아 업체가 외국업체와 계약하여 공급하는 경우 TKDN 적용 여부 TKDN 비율은 분야별 관련 법규에 근거합니다. 매 프로젝트별로 관련 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령 No 54/M-IND/PER/3/2012의거, 정부, 지역정부, 원조자금, 해외투자비용을 근간으로 수행되는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로컬 콘텐츠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TKDN은 다음과 같은 인프라 사업에 적용됩니다 : 증기동력 발전소, 지열발전소, 수력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 통합 사이클(천연가스 및 가스 증기) 전력 발전소, 태양광발전소, 송전망, 하위 발전소, 배전망 프로젝트 등입니다.

발전소	발전 용량	자국산 콘텐츠 비중
수력 (Hydro-non storage pump)	15MW 이하	부품 : 64.20%; 서비스 : 86.06%; 합산 : 70.76%
	15MW 초과 50MW 이하	부품 : 49.84%; 서비스 : 55.54%; 합산 : 51.60%
	50MW 초과 150MW 이하	부품 : 48.11%; 서비스 : 51.10%; 합산 : 49%
	150MW 초과	부품 : 47.82%; 서비스 : 46.98%; 합산 : 47.60%
지열 (Geothermal)	5MW 이하	부품 : 31.30%; 서비스 : 89.18%; 합산 : 42%
	5MW 초과 10MW 이하	부품 : 21%; 서비스 : 82.30%; 합산 : 40.45%
	10MW 초과 60MW 이하	부품 : 15.70%; 서비스 : 74.10%; 합산 : 33.24%
	60MW 초과 110MW 이하	부품 : 16.30%; 서비스 : 60.10%; 합산 : 29.21%
	110MW 초과	부품 : 16%; 서비스 : 58.40%; 합산 : 48.96%
태양 홈 시스템 (Solar Home System (off grid, stand alone))	단위 당	부품 : 39.87%; 서비스 : 100%; 합산 : 45.90%
공동 태양광 발전 시스템(Communal SolarPower System (mini grid))	단위 당	부품 : 34.09%; 서비스 : 100%; 합산 : 40.68%
온그리드 태양광 발전 시스템 (On-Grid Solar Power System)	단위 당	부품 : 37.47%; 서비스 : 100%; 합산 : 43.72%

산업부 장관령 No 65/M-IND/PER/7/2016 에 의거, 휴대전화, 휴대용기기, 태블릿 PC 등 정보통신기기에 적용되는 TKDN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 TKDN 산출에 들어가는 주요 요소는 제조, 개발 및 적용입니다. 각 요소 별로 산출 공식들이 있으며, 제조 70%, 개발 20%, 적용 10%의 비중으로 산출됩니다.

● **참고사항(정부 지정 담당 기관)**

취급하시는 품목에 대한 자국산 콘텐츠 비중 및 등록 프로세스 관련 문의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TKDN 담당 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PT. Surveyor Indonesia	PT. Sucofindo (Pers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Unit Bisnis Industri dan Fasilitas,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Lantai 7 Jakarta Selatan ○ 전화번호 : +62-21-526-5526 (ext 863) ○ 담당자 성명 : Nasrul 또는 Eric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Unit Bisnis Strategi Pemerintahan, Bagian Verifikasi Keteknikan Jl. Raya Pasar Minggu Km. 34, Lantai 13 Jakarta Selatan ○ 전화번호 : +62-21-798-3666 (ext 2424) ○ 담당자 성명 : Sugeng Priyanto 또는 Syamsuri

Q39.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필수 인증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HS 코드 8자리가 다른 경우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필수인증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인도네시아 관세청 포털사이트(www.insw.go.id)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출 품목의 필수 인증 종류, 세금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HS코드 앞 6자리는 전세계적으로 공통이나, 뒷자리는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위 사이트에서 HS코드 6자리 검색 시 해당 HS코드의 하위 품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 바이어에게 확인을 요청하시거나 또는 KOTRA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확인 조사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40. 사전수입승인제도 운영 동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전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중의 하나로서 SNI, HALAL, BPOM등 품질을 기반으로하는 다른 규제와는 달리 수입 총량을 관리 및 감독하는 규제로 실질적인 수입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2월 사전수입 승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No.82/M-DAG/PER/12/2016) 이후 자국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하에 사전수입 승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있어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사전수입 승인제도는 무역부에 수입쿼터 승인을 받기 전상품에 관련

된 부처에게 개별 신청 후 소견서를 받아 진행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기존 109개 항목에 해당하는 수입승인 법령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령(No. 20 Tahun 2021)으로 통합하였고 동 법령이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 시행 후 인도네시아 온라인 투자 플랫폼인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로 일괄 통합되어 INSW에 법인등록을 하고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INSW가 수입승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흔히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할 때 자주 발생하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조율 흐름이 원활치 않아, 수입승인 신청 업체의 신청 서류 심사 및 승인이 지연되고 이로인해 업무상의 많은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신속한 승인 요구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수입승인 관련 특히 철강에 기반한 소재나 부품이 많은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이 신청한 물량대비 현저하게 적은물량을 승인 받아 원부자재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입승인 대상 품목은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타이어, 플라스틱 원료, 윤활유, 위험물 원료, 수공구, 시멘트, 비료, 세라믹, 판유리, 유기 화합물, 섬유제품, 철강 및 합금강제품, 중고 물품(기계 설비), 의류, 핸드폰, 천연보석 등 총4,260개 품목이 수입승인대상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있는 철강(360개), 합금강(64개), 파생제품(55개) 등 제품의 사전수입 승인 물량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합금강 중 사전수입 승인 예외 대상인 제품은 EMS 등으로 반입되는 품목(FOB 기준 USD 1,500이하), 마스트 리스트등재 품목, 수출 목적 수입 편의(KITE, Kemudahan ImporTujuan Ekspor) 인증 업체의 수출용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품목, 중량 기준 5톤 이하 품목(연간 최대 5회), 샘플 등입니다.

섬유 및 섬유 제품도 530개 품목(바틱 및 바틱 문양 섬유제품 75개 포함) 이 사전수입 승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강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예외 제품으로는 샘플 제품,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서 수입한 제품, 최우수 등급 업체(Mitra Utama)에서 수입한 제품, KITE 인증 업체 수입 품목 등이 있습니다.

사전수입 승인제도 유의 사항으로는 수입승인을 받을시 수입승인 기간을 제조업체는 1년, 무역업체는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승인 기간내에 승인 받은 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잔여물량이 존재 할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 기간은 30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승인을 받은 품목의 수입 활동 내역을 매월 15일 이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승인 신청 준비는 최소 3~4개월 이전부터 해야 하는데, 이는 무역부에 수입승인 신청시 구비 요건에 유관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절차 진행에 감안 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 문입니다.

- 인도네시아 산업부/농업부에 위에서 규정한 추천서 신청서류 제출
- 산업부/농업부에서 서류 충족 사항 심사 후 제조공장 등록 및 추천서 발급
- 무역부에 수입추천서 제출 및 수입승인을 받음

수입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여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투자할 때 투자청에 신고한 설비 목록 및 생산 제품, 제품 생산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준하는 자재 소요량을 면밀히 계산하여 수입승인 심사 담당자가 수입자가 신청한 원부자재 소요량을 충분히 납득할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Part 2. 투자 FAQ

1. 외국인 투자 환경
2. 투자 진출(공통)
3. 투자 진출(법인)
4. 투자 진출(대표사무소)
5. 투자 진출(건설업)
6. 노무관리
7. 세무관리
8. 지식 재산권

본 책자 내용은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과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Part 2 투자 FAQ

[외국인 투자 환경]

Q41. 인도네시아의 투자 정책과 각 분야별 담당부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투자를 내자투자(PMDN/ Penanaman Modal Dalam Negeri)와 외자투자(PMA/Penanaman Modal Asing) 2가지로 구분하여 다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자투자는 내국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는 내국인 전용 투자를 의미하고, 외자투자는 인도네시아투자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만 허용되는데, 만약 외국인이 당해 회사의 1주라도 보유하게 되면, 그 투자된 회사의 전체가 외자투자자로 분류됩니다. 내자투자는 거의 모든 업종에 투자를 허용하나 외자투자의 경우에는 적지않은 업종에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제11호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2021년 제10호 외국인 투자개방 및 허용조건에 관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을 통해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관한 제한이 기존에 비하여 많이 완화되었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영역이 더욱 더 개방된 상태입니다. 투자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면 내자투자 회사에서 외자투자 회사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고, 한편, 외자투자 회사에서 내자투자 회사로 변경은 모든 업종에서 허용되어 있습니다.

투자법상의 투자인허가 등 인도네시아 투자업무는 투자조정청(BKPM/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Indonesia)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자투자 승인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일반업종에 대한 외자투자 승인서는 투자조정청 (BKPM), 은행업은 중앙은행, 일반금융은 재무부, 광업분야는 동력자원부에서 발급해 오다가 2018년 6월 21일자로 온라인 통합 사업인허가 발급(OSS/Online Single Submission)에 관한 2018년 제24호 행정부령이 공포된 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할 895개 인허가서를 온라인으로 OSS에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광업분야와 은행분야 등 몇몇 업종의 외자투자승인서는 OSS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해당 부처, 즉 광물자원부(ESDM) 또는 금융감독청(OJK)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OSS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의 경우, OSS에서 먼저 미유효사업허가서 (Sertifikat Standard Yang Belum Terverifikasi)가 발급되고, 그 이후 투자를 이행한 후, 업종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미유효 사업허가서가 유효화되기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구비 및 제출하게 되면,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심사 후 OSS에서 기발급된 사업허가서가 유효(Sertifikat Standard Terverifikasi)하게 되는 방법으로 인허가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Q42.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선도산업 분야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 할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혜택 가능 여부에 관한 공식의견은 투자조정청(BKPM)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Tax Holiday(법인세 면제 정책)에 관한 신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2020)을 발효하여 이전 관련 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를 대체.
-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의 17개에서 18개로, 153개의 사업 분야에서 169개로 확대됨. 또한 5000억 루피아(IDR)이하의 투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됨

■ 면세 혜택

- 면세 혜택 및 기간

혜택 종류	투자 규모(루피아)	혜택 기간	만기 이후
법인세 50% 감경	1000억~5000억	5년	2년간 25% 감경
법인세 100% 면제	5000억~1조	5년	2년간 50% 감경
	1조~5조	7년	
	5조~15조	10년	
	15조~30조	15년	
	30조 이상	20년	

자료원 :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

- 특별 경제 구역 (KEK: Kawasan Ekonomi Khusus)의 경우, 소규모 투자액으로도 5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0~1000억 루피아(IDR)의 투자규모 : 5년간 50% 감면
 - 1000억 루피아(IDR)이상 투자규모 : 5년에서 최대 20년간 감면
- OSS (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해 진행

■ 면세 대상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에 의하면 다음 요건을 갖춰야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선도 산업(18개의 분야)
 - 인도네시아의 법인
 - 신규 투자(법인세 감면거부 결정 또는 통고를 받지 않을것 등의 4가지 요건 존재)
 - 최소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신규 투자 계획
 -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하여 둔 법인세 계산 목적의 회사의 부채 및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 법인세 감면 결정이 있은후, 1년 이내에 투자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 선도산업(18개의 분야)
 - 정의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 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도입,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
 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철강 또는 비철강
 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
 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산업
 4.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화학산업
 5. 무기 기초화학산업
 6. 의약품 원료산업
 7. 방사선, 전자의료, 전기치료 장비 제조
 8. 전자제품 또는 텔레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 제조업으로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백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혹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업
 9. 기계장비 제조업 또는 기계장비 주요 부품 제조업
 10.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에 활용되는 로봇 부품 제조업

11. 발전기 주요 부품 제조
 1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
 13. 선박의 주요 부품 제조산업
 14.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
 15. 주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항공우주산업 지원활동
 16. 농업, 플랜테이션, 임업을 기반으로 펄프 등을 생산하는 산업
 17. 경제 기반 시설
 18.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 해당 업종에 대한 169개의 인도네시아 표준산업 분류코드(KBLI)는 BKPM 규정 No.1/2019의 부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허가 신청 및 절차

-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
- OSS 시스템은 대상여부에 대한 통지서 발급
- 납세자는 통지서 수령 후, 다음의 서류를 OSS 시스템에 제출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
- 필요 서류
 1. 투자계획서상의 고정자산 목록 및 부채자본비율 관련 서류
 2. 모든 국내 주주의 세금완납 증명서
- 법인세 감면 신청은 신규 납세자를 위한 NIB(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시 또는 신규 사업허가서 발급 후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법인세 감면 신청서는 OSS시스템에 의해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전달되며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재무부접수 통지서를 수령
- 국세청은 재무부를 대신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

■ [참고] 투자 소득 공제 (Tax Allowance, Government Regulation No. 78 of 2019)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과 관련하여 기존 GR No.18 2015 및 GR No.9 2016을 폐지하고 GR No.78 2019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30% 소득 공제.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고정자산을 이전하지 않아야 함
- 해당 고정자산은 신규자산이어야 함(다른 나라에서 전체가 이전되는 complete relocation의 경우 제외)
- 소득공제를 위한 신규 사업 허가에 등록된 고정자산
-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리스자산 제외
- 가속 상각 인정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 결손금 공제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10%로 경감 (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가능)
- 166개 사업 분야에 해당되며 동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기의 포괄적인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형 투자 또는 수출지향 투자
 -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사용
- 소득공제 혜택은 경제개발구역에 대한 세제혜택, Tax Holiday, 또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적용 불가

Q43.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제도와 해당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중에 조세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Tax Holiday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Tax Holiday (법인세 감면 정책)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을 마련하여, 기존의 관련 규정인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를 대체하였습니다. 법인세 감면 혜택분야는 기존의 17개에서 18개로, 153개의 사업분야에서 16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5000억 루피아(IDR)이하의 투자액으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 면세 혜택 및 기간

혜택 종류	투자 규모(루피아)	혜택 기간	만기 이후
법인세 50% 감경	1000억~5000억	5년	2년간 25% 감경
법인세 100% 면제	5000억~1조	5년	2년간 50% 감경
	1조~5조	7년	
	5조~15조	10년	
	15조~30조	15년	
	30조 이상	20년	

자료원 :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

- **특별 경제구역 (KEK: Kawasan Ekonomi Khusus)의 경우 소규모 투자액으로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0~1000억 루피아(IDR) 의 투자규모 : 5년간 50% 감면
 - 1000억 루피아(IDR) 이상 투자규모 : 5년에서 최대 20년간 감면
- **OSS (Online Single Submission)를 통해 진행합니다.**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30 Tahun 2020)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도 산업(18개의 분야)
 - 인도네시아의 법인
 - 신규 투자(법인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를 받지 않을것 등의 4가지 요건 존재)
 - 최소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신규 투자 계획
 - 재무부 장관령으로 정하여 둔 법인세 계산 목적의 회사의 부채 및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 법인세 감면 결정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투자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
- **선도산업(18개의 분야)**
 - 정의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 도입,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
 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철강 또는 비철강
 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
 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산업

4.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5. 무기 기초 화학 산업
 6. 의약품 원료 산업
 7. 방사선, 전자의료, 전기치료 장비 제조
 8. 전자제품 또는 텔레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 제조업으로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백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혹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업
 9. 기계장비 제조업 또는 기계장비 주요 부품 제조업
 10.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에 활용되는 로봇 부품 제조업
 11. 발전기 주요 부품제조
 1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
 13. 선박의 주요 부품 제조산업
 14. 기차 주요 부품 제조산업
 15. 주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항공우주산업 지원활동
 16. 농업, 플랜테이션, 임업을 기반으로 펄프 등을 생산하는 산업
 17. 경제 기반 시설
 18.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 해당 업종에 대한 169개의 인도네시아 표준산업 분류코드(KBLI)는 BKPM 규정 No.1/2019의 부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허가 신청 및 절차

-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OSS 시스템은 대상여부에 대한 통지서 발급받습니다.
- 납세자는 통지서 수령 후, 다음의 서류를 OSS 시스템에 제출함으로써 법인세 감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필요 서류
 1. 투자계획서상의 고정자산 목록 및 부채자본비율 관련서류
 2. 모든 국내 주주의 세금완납증명서
- 법인세 감면 신청은 신규 납세자를 위한 NIB(사업자 등록번호) 등록 시 또는 신규사업 허가서 발급 후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세 감면 신청서는 OSS시스템에 의해 국세청에서 재무부로 전달되며 납세자는 OSS 시스템을 통하여 재무부접수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 국세청은 재무부를 대신하여 접수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참고] 투자 소득 공제 (Tax Allowance, Government Regulation No. 78 of 2019)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득공제 혜택과 관련하여 기존 GR No.18 2015 및 GR No.9 2016을 폐지하고 GR No.78 2019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업생산 시점부터 연간 5%씩 6년간 고정자산 투자금액의 30% 소득 공제.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일정기간 동안 해당 고정자산을 이전하지 않아야 함
 - 해당 고정자산은 신규자산 이어야 함(다른 나라에서 전체가 이전되는 complete relocation의 경우제외)
 - 소득공제를 위한 신규 사업 허가에 등록된 고정자산
 -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으로 리스자산 제외
- 가속 상각 인정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10%로 경감(또는 조세협약에 따라 낮은 세율 적용가능)
- 166개 사업 분야에 해당되며 동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기의 포괄적인 개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대형 투자 또는 수출지향 투자
 - 높은 수준의 고용창출
 - 높은 수준의 로컬 콘텐츠 사용
- 소득공제 혜택은 경제개발구역에 대한 세제혜택, Tax Holiday, 또는 노동집약적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다른 세제혜택과 중복하여 적용 불가
Tax Holiday 승인을 받은 기업은 인도네시아에 예치한 자금의 사용과 투자실현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를 국세청(DGT)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재무부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게 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납세자가 적용대상미충족, 투자계획 불이행, 투자이행보고서 미제출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법인세 감면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Q44.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기업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2022년 기준 한인회에 등록된 현재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한국기업은 약 2,500개로 섬유 · 의류업 관련 업체와 무역 · 도소매 · 판매유통 관련 업체

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계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특히 인도네시아내 노동 집약 산업 부문의 생산 및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건설 등 기간산업 분야에 이어 IT, 물류, 유통 등 서비스 분야로의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석유화학, 자동차 및 제약 분야 진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주요 한국 기업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투자 연도	사업 분야 및 품목
코린도그룹	1969	목재, 조림, 제지, 중공업 (자동차,원 드타워) 등
미원	1972	조미료 생산
삼성물산	1975	팜 농장,
대우 인터내셔널	1976	철강, 방위산업, 유연탄, 발전소
KODECO	1981	유전개발 사업
엘지상사	1981	석탄, 팜오일류
KIDECO	1982	석탄 및 광물
CJ 인도네시아	1988	사료/식품 첨가물, 외식,물류, 게임 서비스 등
LG전자	1990	가전제품 생산, 판매
삼성전자	1991	디지털 제품 생산, 판매
우리은행	1992	금융
파트라 에스케이 (Patra SK)	2006	유탄기유
KEB하나은행	2007	1990년 최초 진출(외환은행), 2007년 하나로 변경
롯데마트	2008	유통, 백화점 및 면세점
중부발전	2009	발전소 건설 및 운 영사업
포스코	2010	Kartatau Steel과 합작 철강 제품 생산 및 판매
롯데케미컬	2010	에틸렌 생산
원 텍스타일	2010	Fabric mill, 원단 염색 공장
한국타이어	2013	타이어 생산 및 판매
한화생명	2013	생명보험
우리은행	2013	1992 최초진출, 2013 우리소다라로 변경
종근당	2015	항암제 생산
지누스	2018	매트리스 제조

Q45.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 위치와 입주시 혜택,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는 약 100여개로 주로 민간에 의해 개발분양되고 있으며 자카르타 인근 지역과 외곽지역의 부지 매입비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주로 자카르타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또는 개별 공장형태로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슷한 위치에 소재한 지역이라도 도로 접근 능력 및 주변환경 등에 따라 비용이 천차 만별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장후보지 선정 시에는 부동산 에이전트 확인을 거쳐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카르타에서 60Km 동쪽 까라왕(Karawang)지역의 경우, 인도네시아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내의 부지를 분양중이고 한국기업이 일부 입주한 Artha Industrial Hill의 경우 분양가격이 2018년을 기준으로 150 USD/m² (부가세 10% 제외, 최소 2,500m²)에 형성되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Karawang New Industry City의 경우도 2018년 기준 분양가격이 140USD/m² (부가세 10% 제외, 최소10,000m²)에 형성되었으나 2020년 기준 200 USD/m²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자카르타에서 멀리 떨어진 중·서부 자바에 개발 중인공단의 경우 약 50 USD/m²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자세한 현황은 산업단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Indonesian Industrial Estates Association (Himpunan Kawasan Industri Indonesia /HKI) (hki-industrialestate.com/members/)
주요 산업단지 임대료 정보는 KOTRA 해외시장 뉴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KOTRA 해외시장 뉴스 (news.kotra.or.kr) > 국가 지역정보>인도네시아>투자>투자입지여건)

〈자카르타 인근 산업단지 부지 비용〉

(단위 : US\$)

지역	부지매입비(m ²)			관리비용(m ² /월)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Bogor	213.2	337.6	275.4	0.06	0.06	0.06
Bekasi	150.0	170.0	161.7	0.05	0.10	0.06
Tangerang	142.1	240.1	183.6	0.03	0.08	0.06
Karawang	170.6	227.4	204.7	0.06	0.08	0.07
Serang	142.1	163.5	152.8	0.03	0.05	0.05

* 환율 : US\$ 1= IDR 14,700

* 자료원 : Collier' s International Indonesia (2019 4분기)

Q46.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경제구역 위치와 입주시 혜택, 그리고 입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특별경제구역은 인도네시아어로 KEK(Kawasan Ekonomi Khusus)라고 하고, 영문으로 SEZ(Special Economic Zone)라고 표현됩니다. 이 특별경제구역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방의 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정된 전략적 지역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18개(12개 운영, 6개 개발 중) 특별경제구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 육성산업과 인센티브가 상이하므로 관심 구역이 있으면 사전에 해당 특별경제구역 지역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경제구별 인센티브와 담당자는 위원회 홈페이지(kek.go.id)의 Investment Projec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SEZ)에 추가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5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SEZ 투자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를 확장·단순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많은 중국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최대 시장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 투자 유치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SEZ에 726조 루피아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UNDANG-UNDANG Cipta Kerja; 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법을 통과시키기에 이른 것입니다.

옴니버스법은 SEZ 행정기구 임명권, SEZ 지정안 비준권등 SEZ와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로 더 많이 이동시켰습니다. SEZ 관련 규정의 변경에 따라 SEZ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 세금 및 관세면제 및 할인

- a. 지방정부는 SEZ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PBB(토지 및 건물 소유세)와 BPHTB(토지 및 건물 권리 양도세)를 최소 50% (최대 100%)이상 할인할 의무가 있음.
- b. 정부는 SEZ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수입 관세와 세금, 그리고 소비세에 대한 특권을 부여할 것임.

2. 최저임금 - 국회는 SEZ 내의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갖게됩니다.

3. 부동산 소유 - 외국인이 관광개발 목적의 SEZ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30년간 아파트용 부동산 사용 허가 및 소유권이 부여됩니다.

4. 산업 구역의 지정 - 국회는 SEZ의 산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는 SEZ 내 입주기업이 사업 분야에 따라 특별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SEZ 사업에 대한 위계는 다음과 변경됩니다.

옴니버스법 이전	옴니버스법 이후
중앙정부	중앙정부
SEZ 국가위원회	SEZ 국가위원회
지방 정부	SEZ 지역위원회
SEZ 지역위원회	지방 정부

주: 아래에 위치할수록 권한 약화



〈자료 : 특별경제구역 위원회(kek.go.id)〉

Q47.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정한 보세구역 내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보세공장이란 보세구역의 우대조치를 각 공장 단위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보세공장제도는 보세구역 제도와 통합되어, 보세 구역내 기업(Pengusaha Di Kawasan Berikat)이라고 불립니다. 보세공장은 보세공단에 위치한 보세공장과 일반산업공단, 기타공단 외 지역에 위치한 보세공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세공단에 위치한 보세공장은 보세사업 허가인 Pengusaha Di Kawasan Berikat만 받으면 되고, 일반 산업 공단, 기타 공단 외 지역에 위치한 보세공장은 Pengusaha Di Kawasan Berikat 및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를 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 산업공단 및 기타 공단지역은 보세구역허가 및 보세사업자(공장)허가의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며 Penyelenggara Kawasan Berikat Merangkap Pengusaha Di Kawasan Berikat이라 합니다.

보세공장은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가공하는 장소 또는 기업이라고

정의됩니다. 보세로 승인을 받으면 국외 및 국내의 타 보세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제세 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제세 보세
- 부가세 및 사치세 비과세 (비과세 대상 : 추후 가공을 위해 보세 공장간의 반입/반출되는 물품, 하청업체로 반출되는 물품, 하청업체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임대 계약중인 기계 및 장비, 수입 원부자재, 기계)
- 완제품의 내수 판매는 전년도 수출실적 대비 50%까지 가능 보세공장은 일반적으로 보세 공단 혹은 산업공단에 위치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공단 지역 외에 위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현지 원부자재 또는 현지 생산공정을 사용하는 업체 - 업체가 위치한 군 또는 시에 산업공단이 없는 경우(해당 공단 및 지역 관공서의 확인서 필요)
- 보세공단 혹은 산업공단이외 지역의 경우 공장부지 최소면적 10,000㎡ 이상 보세구역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완료하기에 대략 1-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1) 해당지역 관세청에 보세구역 지정 신청
 - 2) 지역 관세청의 실사
 - 3) 공장내 관세청 직원 사무소 설치
 - 4) 지역 관세청 승인 확보
 - 5) 중앙관세청 보세구역 지정 신청
 - 6) 중앙관세청 실사 및 승인 확보
 - 7) 과거분 관세에 대한 Audit
 - 8) 보세구역 지정 전까지의 관세 정산 및 납부
(결정서 통지 후 1개월 내)

Q48.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제반시설(공업용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 등) 정보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인도네시아의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은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이 확정되면 현지 실사를 통해 보다 세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No.30/2009 (2009 전력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역의 전력 요금이 더 이상 단일화 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사업지역 (Wilayah Usaha)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 요금은 최종 수요자 그룹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력 요금은

수요자의 지불 능력과 각 수요층별 발전가능 전력용량에 따라 책정되고 있습니다. 발전가능 전력용량이 높을수록 전력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전력이 모든 수요층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요층은 전력요금 책정시 높은 가중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전력 요금의 차별화를 위하여 보조금은 차별화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가구의 전력요금은 IDR 319/kWh로 실제 전력생산 비용인 IDR 1,350/kWh(2015년 기준)의 1/4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PLN의 매출은 전적으로 규정된 전력 요금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전력 요금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Kota Tarakan과 Batam지역은 지방정부의 승인으로 결정됩니다. 전력요금의 인상이 국회의 승인이 필요해짐에 따라 PLN의 재무상태는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력 요금이 전력 발전 비용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무부는 PLN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족분을 충당해 주어야 합니다. 2013년 부터는 전력 발전 비용이 안정화 됨에 따라 보조금 지출도 안정화가 되었다. 또한, MoEMR 규정 No.31/2014(No.9/2015로 개정됨)에 따라 PLN은 인플레이션, 석유가격의 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른 효과를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 상기의 보조금은 공익 서비스 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PSO)에 대한 이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SO이윤율은 2009년에 5%의, 2010년과 2011년은 8%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7%의 비율이 각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2022.6)〉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루피아)
전기(산업용)	1,352 ~ 1,699
가스(산업용)	140,000
수도	2,000 ~ 20,000
석유(휘발유)	10,000 ~ 14,500
LPG	16,000

* 자료원 : 인도네시아 수도공사,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인도네시아 가스공사, aturduit.com, GAIKINDO

<https://web.pln.co.id/kontak-kami>,

<https://pamjaya.co.id>, <https://pgn.co.id/>

**Q49.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 투자를 철회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중 가장 큰 부분은 수출입 여건인데 수출입 시 인니 정부의 조세 행정 불투명, 통관등에 정확한 규정미비, 보세구역 수출입 법규 불명확, 인니 세관의 자의적인 유권 해석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통관 절차 시간의 과다소요 및 비공식적인 비용의 발생 가능성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없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반입 및 반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임에도 관공서의 부정부패등의 이슈로 인하여 원자재 수급이 어렵고,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 금액이 수입 원자재 가격보다 높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투자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률/제도적 측면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인허가 갱신 기간이 너무 짧고, 관할 관청의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라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과 제도가 변경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이 시행 전에 이해 당사자 및 관련 기관에 충분한 공지가 되지 않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과 법령 개정 시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행정적 착오와 혼란이 야기 되고, 기업 실무자들과 관련 담당 공무원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각종 법령내에서 상호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적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의 경우, 실제로 수입 통관이 될 때까지 업체가 관세 변동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세관원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착오와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 등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에 관한 컨트롤타워 및 통합서비스의 실질적인 부재가 문제입니다. 정부기관은 'One Stop Service'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투자자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투자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상급기관과 하급 기관간 조정 부재, 법령 내용의 불일치, 담당 공무원의 권한 남용 등으로 One Stop Servic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문

의는 BKPM, 진출 세부 전문분야 인허가 문의는 해당 부서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가 상세하고 일관된 프로세스로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가파른 임금 상승, 전기료 및 가스료 등 유틸리티 비용 인상, 금융지원 및 자금조달 장애, 원부자재 조달 업체의 부재로 인한 원가 경쟁력 미비,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문화적 사고 차이등도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50. 현지 체류시 필요한 비자의 종류, 발급절차, 구비서류, 예상비용을 알려주세요.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비자 : 30일 이내 관광, 친지방문, 공무, 강연/세미나 참석 목적은 무비자 입국 가능하나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
- 도착비자 : 30일 이상 상거 목적 방문시 공항 입국장에서 구입. 1달간 체류 가능하며 1번에 걸쳐 연장가능 (50만 루피아 또는 US\$ 35)
- 사회문화 비자(교육 등) : 체류기간은 60일, 2개월씩 최대 2회 연장가능, 총 180일 체류 가능 (200만 루피아 또는 US\$ 150)
- 단수상용 비자(비즈니스) : 최초60일, 2개월씩 최대 2회 연장 가능(최장 180일 체류가능, 매 연장시 200만 루피아 또는 US\$ 150)
- 복수상용 비자(비즈니스) : 1년 동안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 매번 체류 60일 만기 이전에 출국 및 재 입국 필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닫힌 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임
- 기한부 거주허가 비자(KITAS) : 외국인투자자, 인도네시아 정부/민간기관 피고용인에게 발급. 노동청에서 외국인 인력사용허가 발전기금 1,200불 납부가 선제되어야 취업체류비자 발급 가능. 체류가능기간 1년, 1년씩 5회 연장 가능, 또한 투자자가 자본금 10억 루피아 이상인 경우 노동청에서 발전기금 지불 없이 2년자리 투자자 끼따스 비자 발급 가능

기한부 거주 허가서(KITAS) 발급,체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외국인 고용 계획(RPTKA)허가서 제출
- ② 발전기금 지불 고지서 신청 및 발전기금 1200불 지불 및 NOTIFIKASI 발급
- ③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발신 확인서

- ④ 비자 교부
- ⑤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서 기한부 거주 허가서(KITAS) 발급
- ⑥ 거주 지역경찰서 신고(STM)
- ⑦ 임시거주자 증명서 (SKPS) 발급신청
- ⑧ 외국인 근무신고(Wajib Lapor)

Q51. 장기프로젝트로 관련 인원이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출장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요?

장기적으로 현지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인니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노동부로부터 근로허가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허가증이 있어야 이에 상응하는 비자(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제한적 단기 체류취업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비자는 통상적으로 1년의 기간으로 발급되고, 이는 매 1년 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비자 발급시 발전기금 명목의 비용이 1년마다 US \$1,200 (1인 기준)이 소요되고, 만약 그 보다 단기인 경우에는 월 US \$100로 계산하여 지불되어야 합니다. 1년 근로비자이든 단기 근로비자이든 중도에 근로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된 발전기금(인력개발비, DPPK)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비자 준비에 다소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즈니스 비자를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도네시아 비자 관련 법령상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비자를 받아 체류하는것이 적법합니다. 만약 비즈니스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 근로행위를 하다가 관계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추방 또는 고액의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진출(공통)]

Q52.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는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과 기존 회사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하고자 업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 방법은 기존 인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인허가서 수속에 소요

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법령상 기존 회사의 지분인수로 인하여 회사의 지배력에 변동이 야기되는 경우, 인수합병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규 회사의 설립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전검토 및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규회사 설립 방법을 선택할 경우 우발채무가 발생할 법적 위험성이 없으나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우발채무, 특히, 세무와 관련된 우발채무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분의 인수시에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를 반드시 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조세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서 현지 회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회계실사(Accounting Audit)을 행한 후, 그 결과를 살펴보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는 투자주체 및 경영주체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공동경영형태, 공동 출자했으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단독경영형태, 외국인이 현지인 참여 없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단독출자 단독경영형태가 있습니다.

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법령 및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불허하고 반드시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를 강제하는 업종(예: 건설업, 농업, 원예업, 광업, 발전업등)이 있습니다.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로 현지 국내시장 진출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과 현지인의 기준 및 경영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사업 파트너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자 및 업종추가등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업무처리 방식 등의 차이로 현지법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 공동출자 단독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업종에 현지인의 투자는 받으나 현지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인 파트너를 경영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한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로 현지인이 전체 주식을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지인이 최소 25% 이상을 보

유하고 있으면 주총에서 해산, 합병 혹은 통합을 막을 수 있으며, 현지인이 최소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관 개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지인이 반대하면 상호개정, 증자, 업종 추가, 소재지 변경 등 정관에 있는 중요 사항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인이 최소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주주인 외국인 주주는 대주주인 현지인 주주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됩니다.

다.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 보유를 100% 허용하는 업종에만 가능한 형태이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투자법의 규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로컬 파트너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한국기업이 단독출자해서 로컬파트너의 경영 참여없이 한국기업이 단독경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로컬파트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국인이 경영에 전력투구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해외 진출의 필수 요건인 자금, 기술 및 시장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진출이 유리한 현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법상 현지인과 합작을 강제하는 분야에 실질적인 단독출자 단독경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법상 적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입니다.

Q53.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현지통화(루피아)로만 거래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of Indonesia)은 국내 거래의 루피아화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앙은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3월 31일부터 이미 현금 거래에 한정되어 시행되었고, 위 규정에 따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은행거래등의 비현금 거래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위 BI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 Debit 카드, ATM 카드, 전자 머니, 자금 이체 등 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루피아화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모두 루피아로 표시해야 합니다. 위 BI 규정 위반시 개인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루피아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BI 규정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1일 이전에 외화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동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루피아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비현금 거래인 경우). 또한, 중앙은행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달러화와 같은 비루피아화 거래도 허용됩니다.

Q54. 인도네시아에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기 전 기본정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중앙부서인 법무인권부를 통하여 회사의 정관서류를 열람 파악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법상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회사의 명칭 및 주소, 설립 목적 및 의의, 존속기간, 자본금, 총 주식 등 주식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수 및 인적사항 등입니다. 동 정보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통상 300불 내외의 행정 및 대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재무정보의 경우,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 입수가 불가능 합니다.

업체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보셔야 할 경우는 이러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 지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기는 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지사 연락처입니다.

● 무역보험공사 자카르타 지사

- 주소 : Wisma GKBI 21st. Fl., Suite2104, Jl. Jendral Sudirman Kav.28, Jakarta 10210 Indonesia
- Tel : +62-21-570-5565
- Fax : +62-21-574-1470

Q55. 현지법인/지사 명의로 외국인 개인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모두 가능한지요?

거주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사용권(Hak Pakai) 설정된 토지 위에 건축된 부동산등의 매입만 허용됩니다. 외국인이 외자투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 업무용 토지 매입 및 보유를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소유권이 아닌 건축권, 경작권 등). 외국인 투자법인이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권리가 권리를 소유하는 주체 및 목적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조 법인의 경우에 공장 건축을 위한 건축권(HGB)을

보유할 권리가 주어지고, 농업 관련 법인의 경우 경작권(HGU)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 투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차명 투자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만약, 명의를 대여한 현지인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등의 재산이登記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그러한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명의를 빌린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현지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차명을 이용한 투자의 경우, 실질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정하여 두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토지법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소유권(Hak Milik/HM),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경작권(Hak Guna Usaha/HGU), 사용권(Hak Pakai/HP), 개발권(Hak Eksploitasi/HE) 등으로 분류하여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법적인 주체와 보유 목적에 따라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르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 소유권(Hak Milik/HM)

소유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의 시한이 없는 상속되는 권리로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정 특수 공법인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권(Hak Guna Bangunan/HGB)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입니다. 공장, 창고, 사무실 빌딩, 주택,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이 건축권입니다. 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합니다.

건축권은 최초 최장 30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최장 30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 건축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연장 20년, 갱신 30년 총 80년을 일시에 줄 수 있습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

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경작권(Hak Guna Usaha/HGU)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농업, 어업 및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보유가 허용 됩니다. 경작권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ha 이상이어야 하며 25ha 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작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년, 연장 최장 25년, 갱신 최장 35년이 가능하며 대규모 투자시에는 최초 최장 35년과 연장 최장 25년 및 갱신 35년을 합쳐 최장 95년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경작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로부터 수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도네시아 국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인도네시아 법인, 외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세운 대표사무소, 외국대표나 국제단체의 대표, 정부기관이나 지방기관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최초 최장 25년을 주며, 25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며, 다시 최장 25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 사용권인 경우에는 최초 25년, 연장 20년, 갱신 25년 총 70년을 일시에 줄 수 있습니다.

건축권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권리변동은 모두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제도는 한국과 다르게 아주 복잡합니다. 보다 자세한 부동산 제도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관련웹사이트 <http://haninpost.com/archives/29272>

[투자 진출(법인)]

Q56. 현지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접투자 방식 신규 외자법인(PMA: Penanaman Modal Asing) 설립기간은 1개월 소요되며 실제 업무를 위해서는 법인설립 이후 대표이사의 취업 체류 허가, 개인 납세등록증이 필요하므로 추가로 1~1.5개월 더 소요됩니다. 제조법인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환경영향평가까지 취득하는데 추가로 6개월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현지법을 잘 아는 변호사나 전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설립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문 업체에 따라 또한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직접 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법인설립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인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지법인 설립 (설립 정관 작성)
2. 현지법인 설립 법무부 승인서
3. 상호명 신청
4. 납세의무자등록증 (법인납세 등록번호 NPWP)
5. 사업자 번호 등록(NIB *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6. 사업허가서(Sertifikat Standar Yang Belum Terbitkan, 기존의 Izin Usaha)
7. 사무실 사용허가서 (PKKPR-Persetujuan Kesesuaian Kegiatan Pemanfaatan Ruang)
8.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대표이사 개인 NPWP 발급 후 프로세스 가능함)
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지정서
10.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승인서
11. 수입원부자재 관세감면 승인서
12. 투자 이행 보고
13. 회사 책임사항(Commitment) 완료 결과를 OSS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사업허가서 (Standar Sertifikat yang sudah terbitkan) 재발급
16.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승인서
17. 외국인 고용허가통보서
18.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19. 기한부거주 허가서 (KITAS)

- 20.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21. 외국인 입시거소증명서
- 22. 외국인 취업보고

● **주요 서류**

가. 주주구성(인니 주식회사법 : 주주는 2인 이상이며 개인/법인 모두 가능함) 과 지분을 구성 사항

- a. 주주가 법인인 경우 구비 서류:
 - 1. 법인 사업자 등록증 영문 사본
 - 2. 법인 영문 정관 사본 (번역 공증한 것)
 - 3. 법인 대표의 여권 사본
 - 4. 법인 대표의 영문 자택 주소
 - 5. 법인 e-mail 주소
- b. 주주가 개인인 경우 구비 서류:
 - 1. 여권 사본 (여권의 앞면: 사진/서명 페이지)
 - 2. 영문 자택 주소
 - 3. e-mail 주소 / 핸드폰 번호
- c. 총 투자금액/ 납입 자본금 및 지분을 구성
(최소 투자금: 100억 루피아)

나. 이사회/감사회 구성(인니 주식회사법: 최소 구성은 이사, 감사 각각 1명임)

이사/감사가 1명 이상일 때는 이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임한다.

- 구비서류:
 - 1. 구성원의 여권 사본
 - 2. 구성원의 자택 영문 주소
 - 3. e-mail 주소 / 핸드폰 번호

다. 자본금 납입 확인서, 주소확인서, 정관 서명 위임장

라. 회사 상호명 (반드시 3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3단어 이상)

예) PT. ABC NETWORK INDONESIA

마. 사업장(사무실 또는 공장) 매매/임대차 계약서, 전화번호/팩스번호

바. 현지 사업 내역 (일부 업종)

- a. 영문 공정도 (생산관련 업종)
- b. 연간 생산량 (생산관련 업종)
- c. 생산품 판매가격 (생산관련 업종: FOB 기준)
- d. 수출입 상세품목 및 연간 수출입 예상 금액 (무역업)

Q57. 법인명 설립에 대한 규정이나 금지된 단어가 있나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법무 인권부에 법인명을 조회하고 상호명을 신청하여야 하는 데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제43호 상호명 신청과 사용에 관한 행정부령(PP No 43 Tahun 2011 tentang Tata Cara Pengajuan dan Pemakaian Nama PT)에 의하면,

- 1.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이 이미 등록된 다른 회사 또는 기관의 상호명과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2. 법인명에 저속한 단어(vulgar)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3. 상호명이 최소 3개 단위(suku kata)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4. 법인명에 숫자 또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5. 법인명에 로마/라틴 알파벳만 허용됩니다(예: 아랍어 및 중국어로 된 법인명 사용은 금지됩니다).
- 6. 법인명이 정부기관 이름 동일 또는 비슷하면 안 됩니다.
- 7. 법인명이 회사, 법인, 노동조합을 연상하게 단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Inc, Co., Associaton, Incorporated, 등)

Q58. 신규법인 설립시 초기 투자비용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외환관리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종류에는 외화 유가증권 취득, 금전의 대여, 개인사업, 공동사업 참여, 해외지사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를 하여 둔 외국법인에 대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의 대여가 아닌 일반적 금전의 대여 사유는 해외직접 투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외투자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외화 유가증권의 취득입니다. 외화 유가증권의 취득은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즉, 지분의 매도자가 인도네시아 국적 자연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경우는

외국환 은행에 가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하면 즉시 신고 접수가 되고, 바로 직접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인으로 송금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직접 투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고 접수가 되고, 설립 될 회사의 대표나 이사 또는 직원의 인도네시아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법인이 설립된 후에 그 해당자금이 회사로 입금 되었다는 은행 증명이나 현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서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 신고를 하면 됩니다.

Q59. 법인 설립후 최소 자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가 설립되고 설립정관이 나오면 설립인들 공동 명의로 공증인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법인자격을 신청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조건부로 법인자격을 줍니다. 법인자격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주주가 회사의 계좌에 출자금을 납입한 은행계좌증명서, 출자가 기재된 재무제표, 전체 주주와 이사회 구성원 및 감사가 서명한 출자관련 확인 각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인허가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투자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투자액 내에서 현지법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현지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와 투자조정청(BKPM)에 정기적인 자본활동 보고의무(LKPM)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권자본금의 25% 이상만을 우선 납입하는 것으로도 법인 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는데에 문제가 없었으나, 옴니버스 법에 따른 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법령의 개정 이후, 회사 설립시부터 투자금으로 100억 루피아 이상을 납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달리 회사 설립시 초기에 투자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요건이 강화된 점은 회사의 설립시 주요한 부담 사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Q60.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인 100억 루피아 자본금에서 일부를 인출했다 다시 입금하는 경우에도 최소 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100억 루피아를 전액 불입해야 하는 규정을 충족 시키기 위해서, 현재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그 이후 설립된 회사가 당해 주주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인출을 했다가, 추후 이를 다시 회사에 상환한다면, 법률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방식도 금지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신규 설립된 법인이 주주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것이되고, 그러한 주주에 대한 금전대여는 회계장부에 기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회사 정관으로 정한 절차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주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회사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잠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와 주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그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와 주주의 정상적 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주주의 차입금 원금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수준의 이자의 지급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회사로서는 향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61. 법인 설립후 부지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공장건설까지 자세한 허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① 법인 설립
- ② 토지 매입(매매계약서[정관] 작성) 및 토지 등기(토지대장명의 변경)

1. 인허가 관청: 지역 관할토지청(BPN)

2. 구비서류

- 매매공증(AJB)
- 토지대장(SertifikatTanah)
- 양도세(PPH) / 취득세(BPHTB) 납부 증빙
- 토지 및 건물 재산세(PBB) 납부 증빙(Bukti Bayar PBB)

이상의 인허가 사항은 임대공장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물색하여 정한후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증서작성 공무원(PPAT, 공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 매입 및 등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당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시/군청의 통합 인허가 서비스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공장 위치허가(Izin Lokasi)

1. 인허가 관청 :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2. 소요일: 14~30일
3. 구비서류
 - 회사 설립정관
 - 납세자번호(NPWP)
 - 토지 모양을 표시하는 도면
 - 해당 토지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각서
 - 해당 토지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
 - 투자청승인서
 - 도시계획부서의 승인 서류
 - 토지의 크기와 소유에 관한 진술서
 - 토지 소유주의 해당 토지에 대한 판매의향서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들

④ 건축승인(PBG) 및 기술 조언서(SARAN TEKNIS) : 임대공장은 해당사항 없음

1. 인허가관청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 공공사업 국민주택부(Dinas Kementerian PUPR)
2. 소요일 : 21일
3. 구비서류
 - 신청서
 - 설립정관
 - 대표이사 여권 사본
 - 납세자 등록번호사본
 - 토지대장 또는 A/B 공증 사본
 - 토지세, 법인세 납부 증빙 사본(가장 최근의 것)
 - 진술서: 건물에 대한 기술적인 여건들을 모두 갖출 수 있다는 사항, 건축 계획과 사실에 대한 사항, 지방정부에 의한건물 층수 지정에 대한 사항, 일치선 관련 사항(실사이후)
 - 건물의 도면 관련(위치도, 전 · 후 도면, 단도)

- 설계도와 건축 설계계산 (층수건물, 철골건물, 특수검사대상 건물 혹은 사무실)
- 지역 기준을 위한 지역 토지사용 권고서 사본상업 및 기타 비주거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는 사전에 공장 설계도를 제출하여 공장부지 계획(Site Plan)에 대한 승인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⑤ 공장 건축

⑥ 기타 공장허가(공해허가, 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 건물사용허가)

A. 공해허가, 사업장허가(UUG/HO)

1. 인허가관청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2. 소요일: 15일

3. 구비서류

- 신청서(FC KTPPemohon)
- 대표이사 사진 2매(4×6)
- 토지대장 사본(FC, Surat Tanah)
- 토지 및 건물 재산세 납부 증빙(최종연도) (FC, Tanda lunas PBB tahun terakhir)
- NPWP사본
- 건물도, Site Plan과 현지형세도
-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분쟁이 없다는 소유자의 확인서
- 설립정관
- 위임장
- 사용 기계 리스트와 생산공정도
- 사업지 임대계약서사본
- 환경 관련 정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RKL/RPL/AMDAL
- DSP/DNI 관련 사업관련부처추천장
- 외자투자 및 내자투자의 경우 BKPM으로부터 발급받은 SPT 또는 산업부로부터 받은 비시설용 SPP
- 토지에 대한 권한 요청서사본 (FC, Surat permohonan hak atas tanah)
- 건축승인서(PBG)

B. 환경영향평가(RKL/RPL 공단내, UKL/UPL 공단 외)와 환경허가(Izin Lingkungan)

인도네시아에 제조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환경부로부터 환경평가/환경검사서(UKL-UPL/AMDAL)을 받아야하며 이후 발급받은 환경평가서/환경검사서를 OSS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upload) 하여 최종 환경허가서(Izin Lingkungan)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인도네시아 환경 관련 법령입니다.

-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32 year 2009
-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27 year 2012
- Minister Environment Regulation Number 16 year 2012

인도네시아의 환경 허가에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UKL/UPL) 그리고 그보다 한 단계 위인 AMDAL이 있습니다. 환경 허가의 경우는 관련 전문 환경 컨설턴트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단 내에 위치한 업체인 경우 공단을 통하여 허가 진행을 하며 RKL-RPL(환경영향관리 계획)을 발급받아 OSS 시스템을 통하여 최종 환경허가(Izin Lingkungan)을 취득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법인 인허가와 업체의 생산시설과 설비에 따른 환경관련 기본 정보를 기입하는 질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공장 부지에서 채취한 토양, 물, 공기 등을 검사 측정/검사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허가 발급 후 매 6개월 마다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절차이며 환경에 대해 크게 정부에서 관리나 통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인허가 관청

관할 시청/군 환경청(Walikota/Kabupaten Badan Lingkungan Hidup)

2. 소요일: 1~2개월

3.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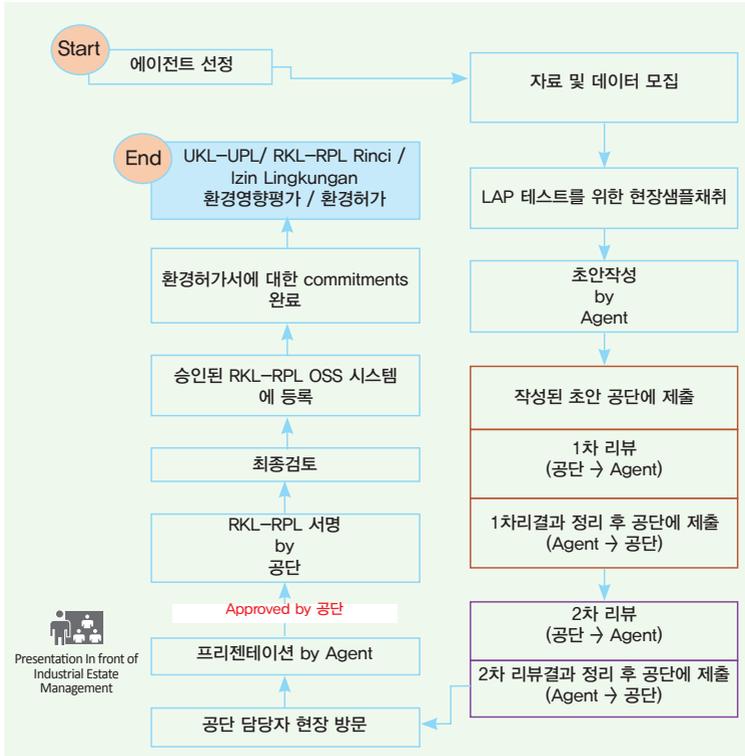
- 투자승인서
- 법인 설립 정관(Akta Pendirian)
- 설립 정관 법무부 등재서(Pengesahan Akta Pendirian)
- 소재지증명서(Domisili)
- 납세등록증(NPWP)
- 사업자 번호(NIB)

- 공해허가/사업장허가(UUG/HO)
- Site Plan
- 공정도
- 공단 확인서(Surat Keterangan Dari Kawasan)
- 토지세고지서(PBB)
- 건축물 Layout
- 비상탈출도(Jalur Evakuasi)
- Company Profile
- 토지대장(Sertifikat Tanah)
- 건축승인서(PBG)
- 임대계약서/매매공증(AJB)/HGB(토지대장: 사용권) (Sewa-Menyewa/AJB/HGB)

C. 환경허가(Izin Lingkungan)

1. 인허가관청 :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2. 소요일: 3~4주
3. 구비서류
 - 투자승인서사본
 - 법인설립정관 사본(Akta pendirian)
 - 설립 정관 법무부 등재서 사본(Pengesahan Akta Pendirian)
 - 소재지 증명서사본(Domisili)
 - 납세등록증(NPWP) 및 납세자번호 (NIB)
 - 환경평가서 사본(TDP)
 - RKL-RPL(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외에서는 UKL-UPL Matrix자료
 - 토지세 고지서 사본(PBB)
 - 건축승인서(PBG)사본
 - 토지대장사본/임대차계약서사본 (Sertifikat Tanah / Sewa-Menyewa)
4. 공단내의 환경영향 평가 진행 절차
 (우측의 절차표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공단마다 지역마다 관할 행정청의 입장에 따라 실질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델타 실리 콘 V, 리브 찌까랑 공단의 경우 많은 소요기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단 내 환경영향 평가 진행 절차〉



(참고 : 일반적인 경우이며, 지역 및/또는 공단마다 상이할 수 있음)

D. 건물사용 허가(izin penggunaan bangunan)

1. 인허가관청

군청 통합 인허가 서비스 부서 (Badan Penanaman Modal & Pelayanan Terpadu Satu Pintu)

2. 소요일: 10일

3. 구비서류

- 회사 서류들
- 건축승인서(PBG)사본
- 토지 문서 사본
- 사업장 허가, 공해허가

Q62. 제조업 법인 설립시, 제조업과 상이한 유통업이나 무역업 등도 한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직접 제조한 품목에 대한 판매/유통은 적법합니다. 별도로 유통업을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통업 허가가 없더라도 자사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만 타사제품도 유통하려면 유통업 허가를 별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새로운 업종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 실현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존 제조업 회사와 별도로 새로운 유통업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Q63. 과실을 송금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요?

인도네시아는 해외자금의 유출입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인도네시아 투자법 제7조 3항에서 투자 과실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의 외환송금에 대하여서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에 대한 송금 목적을 보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법 제8조 3항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원금 또는 과실 등에 대하여 다음의 형태로 외환송금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자본금
-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품, 사업 계속을 위한 자본재 교체에 필요한 대금
-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초과하는 자금
- 차입금 상환
- 로열티 등 지불의무가 있는 사항
- 외국인 근로자 급여
- 회사 매각대금 또는 청산으로 인한 소득
- 손해 배상
- 인수 대금
- 기술지원료, 기술자문 용역비, 경영자문 용역비, 프로젝트 계약에 따른 지급, 지적재산권 관련 지급액 등
- 소유자산의 매각 대금

Q64. 투자활동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1년에 몇 번이나 작성해야 하나요.

투자활동보고서는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으로서 줄여서 흔히 LKPM 이라 칭하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투자실현, 인력고용 실현, 수출 가치를 포함한 생산실현, 파트너십 의무 및 투자이행과 관련된 기타 의무 등을 정기적으로 투자청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LKPM 보고서 작성과 기입방법에 대한 설명은 <https://ekonomi.bisnis.com/read/20220629/9/1549311/update-cara-isi-laporan-kegiatan-penanaman-modal-melalui-ossgrid>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SS RBA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1년에 4회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1사분기 신고는 늦어도 당해년도 4월 10일까지, 2사분기 신고는 7월 10일까지, 3사분기 신고는 10월 10일까지, 그리고 4사분기 신고는 다음 년도 1월 10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Q65. 현지법인 청산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가 정리되는 사유에는 해산, 회사 존속기간의 만료, 흡수합병, 신설합병,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및 사업허가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해산

가. 해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 2) 정관에 규정된 회사 존속 기간 만료
- 3) 법원의 해산 명령서
 - 가) 회사가 공익을 위배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찰이 회사 해산을 신청한 경우
 - 나)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해산 신청에 의거
 - 다) 주주, 이사 혹은 감사가 회사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 라) 파산재산 부족으로 파산경비 지불이 불가하여 상업법원의 파산 선고가 취소된 경우
 - 마)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태에 돌입한 경우
 - 바)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고 관계법규에 의하여 해산해야 하는 경우

나. 해산 결정에 따른 업무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관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을 해야하며, 청산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은 금지됩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 및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보고서가 주총회 또는 법원에서 승인이 된 경우, 회사의 법인격은 완전 소멸하게 되고, 위 청산보고서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회사의 법인격은 유지됩니다.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회사가 해산 상태에 있다는 점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신문 및 관보에 공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 2).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3). 채권 신고 방법 및 신고 기간
 - 채권 신고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

다.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이 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산인은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 규상으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고 주소와 신분이 파악된 모든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라. 해산 방법

1) 주주 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이사회, 감사회 및 1인 혹은 다수인 주주로서 합쳐서 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와 회사 해산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총 발행 주식의 3/4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참석 주주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차 주주총회가 구성원 미달일 경우에는 2차 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2차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 2/3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3/4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청산 직무를 수행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이후는 영업활동을 금하며 청산 절차만 밟아야 합니다. 청산인은 청산 후 청산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의 청산보고서를 승인하는 순간 회사는 법인자격을 상실하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일간지에 공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청산인은 청산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일간지 및 관보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해산을 통보하고 채권 등록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산을 통보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신문 및 관보에 공시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청산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권등록 노력을 했으나 청산인이 채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록을 거부당한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존립 기간 소멸로 인한 해산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상술한 1)항과 유사합니다.

3) 법원의 해산 명령으로 인한 해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청원에 의거 지방법원은 회사의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 검찰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하여 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나)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다) 세무서에 제출한 휴업보고서에 근거 3년간 휴업을 했거나, 대부분 주주의 소재가 불명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양 대주주 간에 보유 비율이 50:50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회사 자산의 감소로 더 이상 정상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주주, 이사 혹은 감사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해산 명령에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은 법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후는 상술한 1)항과 유사합니다.

2. 파산 선고로 인한 해산

가. 파산선고 청구 자격이 있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채권자
- 2)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한 경우, 채무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돈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 해결에 비협조적 혹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 경우, 검찰의 판단에 공익을 해친다는 경우에는 검찰이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 4) 채무자가 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 및 보증기관인 경우에는 증권시장 감독원
- 5)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 업종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나. 파산선고 조건 및 소요 기간

- 1)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채권자가 있으며 그 중 한 채무가 만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불 임금, 체납 세금, 연체 차입금, 연체 임차료, 미불 외상 매입금, 미불 용역비, 미불 공사비 등 채권 채무 관계가 이미 발생했으며 만기가 된 채무는 모두 해당됩니다.
- 2) 파산 재판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업법원: 최장 180일 이내
 - 대법원: 최장 60일 이내

다. 파산선고에 따른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파산선고 즉시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권이 파산 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2) 소송권도 파산 관재인에게 넘어가며 진행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파산 관재인으로 바뀝니다.
- 3)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동결됩니다.
- 4) 이미 설정되어 있는 담보권은 파산 선고일로부터 최장 90일간 담보권 집행이 중지됩니다. 집행 중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담보권 보유자는 담보권을 집행해야 합니다.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이 파산 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재산이 파산비용을 지불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아 파산선고를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내리거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산이 지불불능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재인이 청산 직무를 수행합니다.

3.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해산

은행 혹은 보험회사처럼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는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해산을 해야 합니다.

4. 청산 소요기간 및 비용

회사의 해산 결의 시점으로부터 청산 완료시까지의 통상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위 2년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또한, 회사의 존속기간이 길었던 경우 청산사무의 종결시까지의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청산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납세등록증의 말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회사의 납세등록증 말소를 위해서는 조세 당국의 세무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사의 기간에 따라 청산의 완료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66. 인도네시아의 경매,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현지 경매에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1순위 담보권자만 가지는 특유의 권리로서 자신의 고유하고 독립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저당목적물을 인도네시아 국가 경매부에 신청을 통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목적물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저당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경매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사적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저당목적물을 사적으로 처분하여 정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경매절차는 경매 물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 경매 신청 → 신문공고 → 경매물 공개 → 보증금 불입 → 경매 → 낙찰자 발표 → 잔금 지불 → 경매증서 → 담보권보유자 계좌로 송금 → 채권 정산 → 채무자에게 정산결과 통지입니다.

만일 인도네시아 경매와 매각에 진지하게 참여하시려고 한다면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

Q67. 제조(생산) 법인으로 진출한 다음에 무역이나 판매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추가가 가능한 경우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무역 또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제품이 기존의 제조법인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따로 무역 또는 판매 기능을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 허가를 받을 때 그 자체에 이미 판매와 무역등의 허가도 포함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제조 허가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출 등의 사업활동을 하려고 할 때는 업종추가 및 최소 투자실현(자본금 증자도 투자실현의 일환으로 봄)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매 및 무역에 따른 당해 분야의 외국인 최대 지분을 제한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 생산 법인의 지분을 현지인 또는 현지 법인에 일부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종에 무역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진행할 프로세스는,

1. 정관을 변경하여 무역업 업종을 추가하고 자본금 최소 100억 루피아를 증자한 후
2. 또한 사업자 번호 NIB와 기존의 사업허가서에 해당되는 Sertifika Standar 데이터를 수정
3. 기존 제조회사가 공단에 위치하고 있을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환경허가 관련 RKL-RPL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Q68. 지사와 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사와 대표사무소간 차이도 궁금합니다

외국 기업이 주재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법률적 형태로 진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진출 형태로는 독립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법인

(Corporation)은 본사와 독립 된 법인체로서 진출 하려는 국가의 현지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뜻합니다. 독립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 합니다. 법인의 형태는 주주에 따라 크게 외국인 투자 (PMA : Penanaman Modal Asing)과 내국인 투자 (PMDN : Penanaman Modal Dalam Negeri)로 구분 합니다.

외국인 또는 해외 법인이 현지 회사의 지분을 단 1주라도 보유하면 외국인 투자 법인(PMA)이 되고, 현지인이 현지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면 내국인 투자 법인(PMDN)이 됩니다.

1) 외국인 투자 법인 (PMA)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투자금이 100억 루피아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도 외국인 투자 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 허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 번호 1개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최소 투자 실현금액이 100억 루피아인바, 예를 들어, 사업 업종을 2가지로 할 경우 최소 투자 실현금액은 200억 루피아, 3가지로 할 경우 300억 루피아가 최소 투자 금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주는 최소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2명 또는 개인 대 법인, 법인 대 법인이 주주가 되거나 그 이상의 주주이면 법인 설립 요건을 충족 시키게 됩니다.

2020년 하반기에 발효된 옴니버스법 이전에는 수권자본금의 25%만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허용되었으나, 옴니버스법 및 관련 법령의 제정 이후에는 최소 자본금을 100억 루피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법인의 설립시부터 자본금으로 100억 루피아가 납입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100억 루피아가 투자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임시적으로 법인설립 승인은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설립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내에 총 투자 금액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매분기마다 투자 청에 투자 현황 보고서 (LKPM : Laporan Kegiatan Penanaman Modal)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 납입이 안되거나 지연될 경우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2) 내국인 투자 법인

내국인 투자 법인은 투자 규모에 따라 내국인 자본 투자 법인 (PMDN : Penanaman Modal Dalam Negeri)와 사기업 법인 (SN : Swasta Nasional) 그리고 CV (Commanditaire Vennootschap)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사업 업종은 종류나 수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최소 투자금은 법률로 정해진 않았지만, 대략 PMDN 은 10억 루피아 이상, SN은 최소 5억 루피아 이상, CV는 최소 5천만 루피아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대표 사무소

인도네시아의 대표사무소(KP: Kantor Perwakilan / RO: Representative Office) 또는 일반 연락사무소는 건설 대표사무소를 제외하고는 상업적, 영리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만 가능하며 수주, 입찰, 계약, 수출입 및 유통등과 같은 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의심 되면 국제청에서 조사하거나 납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또는 연락사무소는 업종에 따라 세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회사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KPPA :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Asing)를 받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유통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가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 업종의 경우 외국 건설업 대표 사무소 허가(IPBUJKA :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상업부 규정 (10/M-DAG/PER/3/2006)에 의하면 KP3A는 상업 또는 판매, 계약서 서명이나 클레임 등 일체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진출(대표사무소)]

Q69. 대표 사무소 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대표 사무소 설립 절차

1) 본사 구비 서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본사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본국의 법무부 또는 외교 통상부에서 Apostille 공증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 1.1. 본사의 정관(영문, Apostille 공증)
- 1.2. 본사의 등기부 등본(영문, Apostille 공증)
- 1.3. 본사의 사업허가서(영문, Apostille 공증)
- 1.4. 지사장 임명장 (영문, Apostille 공증)
- 1.5. 지사장 각서
- 1.6. 지사장 여권 사본

- 1.7. 지사장 이력서(영문)
- 1.8. 지사장 최종 학력 증명서(영문)
- 1.9. 수속용 위임장

상기 서류를 투자청 OSS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대표 사무소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인허가 서류를 취득하게 됩니다.

2. 일반 대표사무소 (KPPA)

- 1) 납세의무자 등록증 (SKT / NPWP) : 관할 세무서 발급
- 2) 사업자 등록증 (NIB) : OSS 발급

3. 건설 대표 사무소 (BUJKA)

- 1) 납세의무자 등록증 (SKT / NPWP) : 관할 세무서 발급
- 2) 사업자 등록증 (NIB) : OSS 발급
- 3) Certificate Standard (기본 증명서) : OSS 발급 상기 건설 대표사무소가 설립되면 이를 기초로 건설협회에 등록을 하고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4) 건설 협회 자격증 취득 종류
 - (1) 건설 협회 등록 (KTA : Kartu Tanda Anggota)
 - (2) 건설면허 고정 사업장 허가서(SBU: Sertifikat Badan Usaha)

상기 건설 협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현지 건설 업체 파트너의 인허가 서류가 필요 합니다.

4. 건설 면허 취득을 위한 현지 업체 인허가 서류 목록

- 1) 설립 정관과 변경 정관, 그리고 각정관의 법무부 승인서
(AKTE Pendirian, AKTE Perubahan, SK Kehakiman)
- 2) 법인 세적 등록증, 부가세 세적 등록증
(SKT NPWP, PKP BADAN)
- 3) 이사와 감사의 주민등록증, 개인 세적등록증, 이메일, 전화번호
(KTP Director, Komisaris, NPWP Pribadii, E-mail address, Nomor Telpon)
- 4) 건설업 고정 사업장 허가서와 건설협회 등록증, 건축학 전공자 신입 사원과 경력 사원 대학 졸업 증명서

- (SBU B1/B2, KTA(Kartu Tanda Anggota), SKA (Sertifikat KeAhlihan)
- 5) 사업자 등록증 / 건설 면허 / 소재지 증명서 (NIB, IUKJ OSS, SKDP)
 - 6) 건설 실적 계약서 :
 - (1) 단일 프로젝트 (840억 루피아이상), 최근 10년간 누적 건설 실적 (2,500억 루피아이상)
 - (2) 완공 보고서
 - (3) 비용 사용 내역서
 - (4) 인보이스 / 세금 계산서
 -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손익 계산서, 대차 대조표)
 - 8) 최근 2년간 법인세 연말정산 세무신고서 위와 같은 서류 목록을 기초로 대표 사무소의 건설면허 취득이 완료되면 현지 건설업체를 파트너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JO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5. JO 설립 인허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JO 정관 (AKTE JO)
- 2) 소득세, 부가세 세적 등록증 (NPWP, SKT, PKP)

Q70.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비자를 발급할 때 근무지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인도네시아의 지사는 여러 지역에 설립할 수 있으나, 한명의 지사장이 여러 지역의 지사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명의 대표 사무소장은 한 지역에서만 근무한다는 서약서 (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후 지사 설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한 사무실에서만 비자를 받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사를 설립하고, 별도의 지사장이 취업 비자를 받아 운영하셔야 합니다

Q71. 대표 사무소가 주기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하는 활동보고서가 있나요?

대표사무소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허가서에 활동상황 보고의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표사무소와 무역대표사무소의 경우 매년 2차례 반기별로 Laporan Kegiatan Kantor Perwakilan 라고 불리는 대표사무소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는 투자청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시면 되고, 보고시기는 설립일과 상관없이 1-6월 업무는 7월 중, 7-12월 업무는 후년 1월 중 보고하여야 합니다. 모든 관공서 업무가 OSS 시스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 등 관공서 업무가 진

행이 안되니, 위 정해진 기간내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고는 BKPM (투자조정청) 에 OSS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Q72. 대표사무소나 지사 설립시 법으로 규정된 회사명 표기가 있나요?

회사명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투자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사명을 그대로 표기해야만 합니다. 다만 상호명 앞에 RO라는 글자를 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RO를 설립 후, 계속해서 JO를 설립하셨으면 상호명 앞에 JO를 붙여서 표기하시고, RO상호명과, JO 상호명을 사무실 앞에 나란히 부착하시면 됩니다. RO와 JO 사무실은 한 주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73. 지사를 폐쇄하는 절차, 비용 및 소요기간 등이 궁금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경우 승인기관인 BKPM(투자청)에서 폐쇄에 대한 승인을 받고 세무서에 세적등록 해지 절차를 밟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단, 납세 등록증 해지의 경우 세무서의 세무감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지 절차를 마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대표 사무소의 경우 매출로 인한 경상 손익이 없기 때문에, 세무 감사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등록증 취소 (Pencabutan NPWP) 신청한 후 철수를 하고, 사후 관리는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입니다.

Q74. 대표 사무소로 진출한 다음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대표 사무소와 법인은 인허가 종류가 다릅니다. 대표 사무소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불가합니다. 대표 사무소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폐쇄 또는 유지를 선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법인의 경우, 최근에 변경된 규정을 보면 건설업 대표사무소 (BUJKA) 로 건설 경험과 실적을 쌓은 후에 이를 기초로 건설업 법인을 새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설업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건설업 연락 사무소로 경력과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대표사무소의 실적을 기초로 외국인 건설업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대표 사무소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경우 폐업을 하시면 됩니다.

※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대표사무소가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편의상 지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대표사무소가 맞습니다.

[투자 진출(건설업)]

Q75. 건설업 진출은 다른 법인/대표사무소(지사) 진출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설업 진출은 다른 법인 또는 지사 진출과는 달리 개인 주주의 투자를 불허합니다. 따라서 본국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에 한하여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투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최소 지분을 33%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건설업 대표사무소 진출의 경우 본사의 인허가 서류를 기초로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후 100% 현지지분의 건설회사와 파트너를 맺고 JO (Joint Operation)를 설립해야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76. 건설업 진출을 위한 절차 및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 건설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방법은 외국 건설회사의 대표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과 합작 현지 외자투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설 대표사무소 또는 건설 법인을 설립한 후 건설협회 가입과 건설업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 합니다.

Q77. 외국 건설회사의 건설면허 허가절차, 신청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외국 건설 회사의 설립

1) 구비 서류

- (1) 본사 설립 정관 : 영문 번역 공증후 외교부 또는 법무부의 Apostille
- (2) 사업자 등록증 (Certificate of Business)영문본 외교,법무 Apostille
- (3) 본사 건설 면허 공증

2. 외국 건설 회사 설립 절차

- 1) 해외투자 건설 법인 설립 정관 (본사지분:67%, 로컬법인 :33%)
- 2) 법무부 등기본 (SK Kehakiman)
- 3) NPWP (세적 등록증)
- 4) NIB (사업자 등록증)
- 5) SPPL OSS (약식 환경 영향 평가서)
- 6) SERTIFIKAT STANDARD (표준 인증서)

3. 건설 면허 취득 구비 서류

- 1) 건설협회 가입 (KTA)
- 2) 건설 전공자 채용 증명서 (SKTK)
(SERTIFIKAT KOMPETENSI TENAGA KONSTRUKSI)
 - (1) 법인의 건설 전문분야 책임자 채용 (PJSKB) : 1 명
(Penanggung Jawab Sub-Klasifikasi Badan Usaha)
 - (2) 법인 기술책임자 채용 (PJTBU) : 1명
(Penanggung jawab Teknik Badan Usaha)
- 3) KITAS PJB (대표 사무소장 KITAS)
- 4) NPWP Pribadi PJB (대표 사무소장 개인 세적 등록증)
- 5) 본사 재무 구조표
 - (1) 재무제표 : 최근 2년치
 - (2) 회계사 감사 보고서
 - (3) 법인세 연말 정산 세무 신고서
- 6) 본사의 공사 실적 증명서
 - (1) 전문분야 공사면허 : 대형 (B)
 - (2) 공사실적 : 인도네시아 국내 최근 2년 공사 실적 각 업종 당
(Sub-qualifikasi) 최소 500억 루피아 이상
 - (3) 공사완공 증명서
 - (4) 세금계산서
 - (5) 인수인계서
- 7) 전문 건설장비 : 업종당 최소 5가지 (인니 국내 구매)
- 8) 품질 관련 ISO 자격증 (ISO 9001 - 2015)
- 9) 부패근절 관련 ISO자격증 (Sertifikat ISO SMAP 37001)
- 10) 건설 면허 취득 (SBU)

a. 세법상 거주자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개인은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되며,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개인
- 인도네시아에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
-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사를 가진 개인

참고로 한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경우에 따라 개인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최종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한국-인도네시아 조세협약에 따르면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지, ④ 상호합의의 순으로 최종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합니다.

b. 연간 소득공제금액(PTKP) – 2022년 기준

항목	금액
납세자 본인 기초공제	Rp 54,000,000
배우자 공제	Rp 4,500,000
부양자 공제 (최대 3인)	Rp 4,500,000
직책수당 공제 (총소득의 5%, 최대 Rp 500,000/월)	Rp 6,000,000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노후연금 저축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2%)	전액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퇴직연금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1%)	전액

c. 개인 소득세율

연간소득	세율
Rp 60,000,000 이하	5%
Rp 60,000,000 초과 ~ Rp 250,000,000 이하	15%
Rp 250,000,000 초과 ~ Rp 500,000,000 이하	25%
Rp 500,000,000 초과 ~ Rp 5,000,000,000 이하	30%
Rp 5,000,000,000 초과	전액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퇴직연금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1%)	전액

d. 납부

개인소득세는 지급하는 자가 매월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총 급여에서 연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

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이 아닌 개인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총 지급액의 50%가 과세표준으로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총 지급액의 20%를 PPh26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e.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

한국의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사용자는 12월 급여지급시 연간 급여를 바탕으로 PPh21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급여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3월말까지 개인소득세 확정신고(Form 1770)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는 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하며 자산 및 부채상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혼여성 및 미성년 직계존속의 소득은 남편의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나, 기혼여성의 소득이 남편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과 관련이 없으며 지급하는 자에 의하여 이미 PPh21을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추가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노무관리]

Q78. 현지 법인 및 대표사무소 설립시 외국인 1명당 현지인 고용 의무비율이 있는지요? 한국인은 몇 명이나 비자발급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지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현지법인의 경우 정관에 등재되어있는 이사와 감사의 경우에는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지만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않은 일반직 직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근로자를 대체 할 현지직원(TKIP)이 1:1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사무소의 경우 소장은 현지법인의 이사급에 해당하지만 인도네시아 노동청에서 지사장의 경우에도 일반직원과 동일시하여 외국인 소장을 대신 할 현지직원을 1대1로 요청합니다. 다만,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노동부에서 주재원 체류허가 취득시 주재원 1명당 10명의 현지인 직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등 담당 노동부 직원의 성격에

따라 폐지된 과거 규정을 근거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경우 실제 법률과 업무 진행상의 내부 규정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규칙 개정이 빈번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79. 기존 법인장으로 국내 본사에 있는 직원으로 변경후 수입대표 식으로 권한 위임하여 현지직원이 운영가능한지요?

현지법인의 법인장이 반드시 해외 현지에 근무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외국인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한 현지인 직원에게 위임장을 줘서 법인장의 임무를 수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위임장 제도가 일반 포괄적 성격의 위임장은 인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별 위임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 직원에게 위임시킬 경우 건건마다 위임장을 줘서 대리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현지인 직원이 있으면 이사회원으로 선임하고 정관에 등재하면, 정관에 제한규정이 있지 않는 한 선임된 현지인 이사회원에게도 회사를 대표하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어서 한국인 대표이사의 위임장 없이도 현지인 이사 단독으로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Q80. 현지 임금 수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임금수준은 지역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총 34개주 중 주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시·군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지방 자치 주는 서부자바주, 중부자바주, 동부자바주, 족자지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각 자치주별 최근 3년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2022 지방자치 주별 월 최저임금 현황 (단위 : 루피아)〉

	지방자치 주	2020	2021	2022
1	Aceh	3,165,030	3,165,031	3,166,460
2	Sumatera Utara	2,499,422	2,499,423	2,522,609
3	Sumatera Barat	2,484,041	2,484,041	3,512,539
4	Riau	2,888,563	2,888,564	2,938,564
5	Kepulauan Riau	3,005,383	3,005,460	3,050,172
6	Jambi	2,630,161	2,630,162	2,698,940

7	Sumatera Selatan	3,043,111	3,043,111	3,144,466
8	Bangka Belitung	3,230,022	3,230,024	3,264,884
9	Bengkulu	2,213,604	2,215,000	2,238,094
10	Lampung	2,431,324	2,432,002	2,440,486
11	Banten	2,460,968	2,460,997	2,501,203
12	Bali	2,493,523	2,494,000	2,516,971
13	DKI Jakarta	4,267,349	4,416,187	4,641,854
14	NusaTenggara Barat	2,183,883	2,183,883	2,207,212
15	NusaTenggara Timur	1,945,902	1,950,000	1,975,000
16	Kalimantan Barat	2,399,698	2,399,699	2,434,328
17	Kalimantan Selatan	2,877,447	2,877,449	2,906,473
18	Kalimantan Tengah	2,903,144	2,903,145	2,922,516
19	Kalimantan Timur	2,981,378	2,981,379	3,014,497
20	Gorontalo	2,586,900	2,788,826	2,800,580
21	Sulawesi Utara	3,310,723	3,310,723	3,310,723
22	Sulawesi Tenggara	2,552,014	2,552,015	2,576,016
23	Sulawesi Tengah	2,303,710	2,303,711	2,390,739
24	Sulawesi Selatan	3,103,800	3,165,876	3,165,876
25	Sulawesi Barat	2,571,328	2,678,863	2,678,863
26	Maluku	2,604,960	2,604,961	2,619,312
27	Maluku Utara	2,721,530	2,721,530	2,862,231
28	Papua	3,516,700	3,516,700	3,561,932
29	Papua Barat	3,134,600	3,134,600	3,200,000
30	Kalimantan Utara	3,000,803	3,000,804	3,016,738
31	Jawa Barat	1,810,350	1,810,351	1,841,487
32	Jawa Tengah	1,742,015	1,798,979	1,812,935
33	Yogyakarta	1,704,608	1,765,000	1,840,487
34	Jawa Timur	1,768,777	1,868,777	1,891,567

도시 인근지역 대기업은 월급제가 대부분이며, 중소기업이나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단순노동에는 주급을 적용합니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주급형태로 지급되며 한국과 같이 임률에 따른 인건비 계산이 극도로 어려우나 최저임금 보다 약간 높게 계산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회사별 인도네시아 임금 수준을 알수 있는 웹사이트가 아래와 같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s://www.qerja.com>

최저임금은 구매력, 고용율 및 중간임금 등 경제 및 인력상황에 근거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은 매년 조정하고, 최저임금은 해당지역의 최저임금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 상한선은 1인당 월 평균소비액 x 평균 가구 구성원 수 % 가구 당 취업자이며, 최저임금 하한선은 상한선의 50%입니다.

주최저임금은 주지사 결정문으로 늦어도 현연도 11월 21일까지 공포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효합니다. 주지사는 특정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율이 주의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혹은 해당 시/군의 지난 3년 동안 물가상승율을 감한하며 경제성장율이 매년 포지티브하여 주 경제성장율보다 높은 경우에 주지사는 주 최저임금 공포 후 시/군 최저 임금을 공포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 및 소규모 사업의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정하나 주 주민의 평균 소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하며 주 빈곤선 보다 최소 25% 이상 높아야 한다. 최저임금 규정 예외에 해당되는 영세사업 및 소규모 사업은 전통자원 활용 사업이어야 하며, 하이텍 혹은 자본집약 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 지불을 금하며, 1년 이하 근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불 의무가 있으며 1년 이상 근무 근로자에게는 임금 규정에 따라 지불 의무가 있다.

Q81. 인도네시아의 기준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근로시간 : 주 40시간입니다

*주 5일 근무 또는 6일 근무 결정은 사용자(회사)의 재량입니다.

1.1. 주 5일 근무제

- 월 ~ 금(5일) x 1일 8시간 근로 = 40 시간

1.2. 주 6일 근무제

- 월 ~ 금(5일) x 1일 7시간 근로 = 35 시간 근로

- 토 x 1일 5시간 근로 = 5 시간 근로

*합계 35 시간 + 5 시간 = 40 시간

1.3. 유해 위험작업 근로시간 : 1일 최장 6시간, 주 최장 35 시간

1.4. 휴식시간 : 연속 4시간 근로후 최소 30분

2. 휴가

2.1. 연가 : 12개월 근무후 연 12 근무일의 휴가권 발생

2.2. 경조휴가 : 자녀할례(2 근무일), 자녀세례(2 근무일), 자녀출산(2근무일)

3. 종교 활동 시간 : 근무시간 중 근로자들에 대한 기도시간 허용

4. 여성근로자 : 수유기회 제공 의무

Q82. 인도네시아에 근로자는 어떤종류가 있는지요?

인도네시아에서 모든 고용계약은 기한부 고용계약(PKWT) 혹은 무기한부 고용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 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한인기업인들은 통상 기한부 고용계약은 계약직이라고 호칭하고 무기한부 고용계약은 정규직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기한부 고용계약을 불허하는 일

고정적으로 하는 일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정부령 제4조 2항) *시한성이 없는 일반 생산 직원 혹은 사무실 직원에 대한 기한부 고용계약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바뀝니다.

2. 기한부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일

기한부 고용계약은 일의 유형과 성격 또는 활동에 따라 특정시간 내에 완료되는 특정일에 대해서만 체결 할 수 있습니다. 기한부 고용계약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

- 계절성 일

- 새로운 제품, 새로운 활동 또는 아직 시험 또는 조사중인 추가 제품과 관련된 일

- 유형과 성격 또는 활동이 고정적이지 않은 일

3. 기한부 고용계약 체결 허용 기간 : 최장 5년

- 3.1. 기한부 고용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 연장이 가능하나 처음 계약기간과 연장계약을 포함하여 최장 5년으로 제한합니다.(“예” 처음 3년 + 연장 2년 = 최장 5년)
- 3.2. 기한부 고용계약 만기일전에 계약된 일이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은 일이 완료되는 날 자동으로 고용관계가 종결됩니다.
- 3.3. 일의 종류나 일의 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일은 출근 기준으로 기한부 고용계약(*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미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은 무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 한 달 근무일이 21일을 초과하는 경우
 - 계속 3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
 - 단체근로계약으로 일용직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계약서에 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 작업 내역 및 임금액 그리고 근로자를 사회보장보험에 부보
- 3.4. 기한부 고용계약에는 견습기간을 두지 못합니다. 견습기간을 두면 원천무효이며 근무기간으로 계산됩니다.

4. 기한부 고용계약은 최소한 다음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상호, 주소 및 업종
- 근로자의 성명, 성별, 나이 및 주소
- 근로자의 직책 혹은 직무, 근무지, 임금액 및 임금 지급방법
-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기한부 고용계약 발효일 및 기간
- 기한부 고용계약 체결일 및 장소, 사용자/회사 및 근로자의 서명

5. 기한부고용계약 등록 의무

기한부 고용계약은 온라인으로는 체결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관할 노동국에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이 준비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체결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관할 노동국에 등록해야합니다.

6. 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기한부 고용계약으로 최소 1개월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6.1. 계속 12개월 근무자 : 1개월 급여(*기본 급여 + 고정 수당) = 퇴직금

6.2.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근무자 : 근무한 전체 달 수 × 1달 급여액 / 12개월 = 퇴직금

6.3. 12개월 이상 근무자 : 근무한 전체 달 수 × 1달 급여액 / 12개월 = 퇴직금

6.4. 영세기업 및 소 사업자와 근로자 간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서 종료 시 퇴직금은 당사자 간 합의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위 공식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6.5. 기한부 고용계약서 만기 이전에 근로자 혹은 사용자가 기한부 고용계약을 종결하는 경우에 퇴직금은 이미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위 공식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 : 1년 기한부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6개월 근무 후 해고 시 지불해야 하는 급여 및 퇴직금

*급여 : 잔존 기한부 고용계약 6개월에 대한 급여

*퇴직금 : 1개월 급여(기본 급여 + 고정 수당)

7.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불

기한부 고용계약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불 의무가 없습니다.

8. 기한부 고용계약서 체결 언어

8.1. 기한부 고용계약은 인도네시아어 및 라틴 문자를 사용해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8.2. 기한부 고용계약서를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로 이중 언어로 체결한 경우 둘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고용계약서가 외국어 고용계약서에 우선합니다.

Q83.아웃소싱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아웃소싱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무관리가 용이하며 인건비 부담이 적으며 생산성이 더 높아서 선호하나 근로자는 최저임금, 출근수당, 직책수당, 산재보험, 식대 및 교통, 연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종교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 장기근무 기회 등 거의 모든 분야

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꺼리는 편입니다. 아웃소싱의 종류는 작업도급계약 (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PPP), 인력공급계약 (Penyediaan Jasa Pekerja/Buruh/PJPB)이 있습니다.

1. 작업도급 계약(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

경영이나 실무에서 회사의 주 생산활동과 분리된 작업이나 도급주 회사의 직접 혹은 간접지시로 시행하는 작업이나 도급을 주는 공정이 해당 업종의 적법한 협회에서 정한 생산공정도 상 주생산공정이 아닌 보조 공정이며 주 생산공정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작업에 허용합니다.

2. 인력공급 계약 허용공정/분야

회사의 보조기능 혹은 생산공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작업은 인력공급업체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인력 공급회사에게 작업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인력 공급계약을 허용하는 보조기능으로 보는 일은 청소작업 (Cleaning Service), 음식 공급(Catering), 경비(Security), 광업 및 석유분야 용역(Mining Service) 및 근로자 출퇴근 수송(Transportation) 등입니다.

3. 인력공급계약(Perjanjian Penyediaan Jasa Pekerja/Buruh)

인력공급계약은 재하청을 금합니다

Q84. 현지 법인에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고용에 관해서 근로기준법(근로에 관한 법률 2003년 제13호)과 외국인 고용에 관한 정부령 2021년 제34호로 외국인 고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 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법인이 외국인 채용시 반드시 고용허가와 체류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고용허가는 노동부에서 체류허가는 이민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에 대한 인허가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 관할부처 추천서(*코로나 사태 임시)
- 1.2. 외국인 고용계획 승인서(RPTKA) : 노동부
- 1.3. 고용허가 신청(Pemohonan Notifikasi) : 노동부
- 1.4. 인력훈련기금(DKPTKA) 납부 : 국책 은행
- 1.5. 고용허가(Notifikasi) : 노동부
- 1.6. 기한부거주 허가비자 케이블 : 이민청

- 1.7. 기한부거주 허가서(ITAS) : 이민국
- 1.8. 경찰 신고서(STM) : 지방경찰청
- 1.9. 거소증(SKTT) : 주민등록국

Q85. 현지 법인에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은 한국의 노동법과 차이가 많으므로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종류는 무기한부 고용계약 근로자(PKWTT)와 기한부 고용계약근로자(PKWT), 오직 둘 뿐입니다. 모든 근로자의 법적신분은 이 둘 중 하나에 속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은 인도네시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뿐만아니라 2021년 외국인 노동력 사용에 관한 정부령(PP No. 34 Tahun 2021 tentang Penggunaan Tenaga Kerja Asing) 제 4조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주 (Pemberi Kerja)는 특정한 직책과 특정 기간동안에만 그리고 주어질 직책에 맞는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TKA hanya dapat dipekerjakan oleh Pemberi Kerja untuk jabatan tertentu dan waktu tertentu, serta memiliki kompetensi sesuai jabatan yang diduduki.) 현지에서 적용되고 있는 노동법과 이민법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86. 고용주가 임금의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고용주 즉 회사가 직원을 채용시 직원에게는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반면 고용주 또는 회사는 직원에게 당연히 임금지불과 근로소득세(PPH 21)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과 직계가족의 안전을 위해 직원을 사회보장보험(BPJS)에 가입시키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회보장제도 범위는 a. 산재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 b. 사망보험(Jaminan Kematian) c. 노후연금(Jaminan Hari Tua) d. 건강보험(Jaminan Pemeliharaan Kesehatan) 이며 이 사회보장보험의 취지는 사업 재해, 사망, 노후, 건강 등의 문제로부터 근로자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1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을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기준은

- 산재보험 월 급여의 0.24% ~ 1.74%(회사부담)
- 사망보험 월 급여의 0.3%(회사부담)
- 노후보험 월 급여의 5.7% (회사 3.7%, 개인 2%)
- 건강보험 월 급여의 5% (회사 4%, 개인 1%)

이 기준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종교상여금 지불 의무

1(한)달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종교 명일에 매년 종교상여금(THR) 지불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액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최소 1(한)달 급여액의 종교 상여금을 지불해야하며,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1달 급여액 / 12개월 x 근무 월수의 종교 상여금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Q87.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해 정관상 대표로 되어있었는데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취업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기존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회사는 대표이사로 등록, 새로운 회사는 근로비자 발급 희망)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기존 회사에 대표직 사임을 내고 주주총회에서 사임을 결의하고 이민 국에 EPO(출국허가)를 받아 출국하면 기존회사와 관계가 종료됩니다. 출국 전에 새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허가와 기한부거주 비자 수속을 해서 재외 인도네시아 공관으로 보내고, 거기서 비자를 받아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새 회사에 근무를 개시하면 됩니다.
2. 기존 회사와 새 회사, 두 회사에서 당분간 근무하다가 기존 회사를 떠나려면, 기한부 거주허가(ITAS)는 기존 회사의 스폰서십 하나 만으로 되나 고용허가(RPTKA + NOTIFIKASI)는 기존 회사명의로와 새 회사명의로 각각 받아야 합니다. 기존 회사를 완전히 떠나려면 기한부 거주허가의 스폰서 변경(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허가를 이민청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두 회사에 동시 근무는 이사회원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

Q88. 현지 근로소득세의 원천 징수를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세법상 거주자

다음의 조건을 갖춘 개인은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되며, 개인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둔 개인
- 인도네시아에 12개월 내에 183일 이상 체류한 개인
-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사를 가진 개인

참고로 한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경우에 따라 개인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최종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하여야 하며, 한국-인도네시아 조세협약에 따르면 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지, ④ 상호합의의 순으로 최종 거주자의 지위를 판단합니다.

2. 연간 소득공제금액(PTKP) - 2022년 기준

항목	금액
납세자 본인 기초공제	Rp 54,000,000
배우자 공제	Rp 4,500,000
부양자 공제 (최대 3인)	Rp 4,500,000
직책수당 공제 (총소득의 5%, 최대 Rp 500,000/월)	Rp 6,000,000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노후연금 저축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2%)	전액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 퇴직연금 본인부담분 (총소득의 1%)	전액

3. 개인 소득세율

연간소득	세율
Rp 60,000,000 이하	5%
Rp 60,000,000 초과 ~ Rp 250,000,000 이하	15%
Rp 250,000,000 초과 ~ Rp 500,000,000 이하	25%
Rp 500,000,000 초과 ~ Rp 5,000,000,000 이하	30%
Rp 5,000,000,000 초과	35%

4. 납부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총 급여에서 연간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아닌 개인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경우, 총 지급액의 50%가 과세표준으로 동 과세표준에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PPh 21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경우, 총 지급액의 20%를 PPh 26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해야 합니다. 단,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감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및 확정 신고

한국의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사용자는 12월 급여지급 시 연간 급여를 바탕으로 PPh 21을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급여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익년 3월말까지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Form 1770)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 신고는 급여소득, 투자소득, 자본소득, 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자산 및 부채상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기혼여성 및 미성년 직계존속의 소득은 남편의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나, 기혼여성의 소득이 남편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관련이 없으며 지급하는자에 의하여 이미 PPh 21을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Q89. 법인세 납부에 대해 알려 주세요.

Corporate Income Tax(법인소득세)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ax Rates (적용세율)

인도네시아의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단일세율로 2019년까지 25%였으며, 2020년부터 2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부터 20%로 인하 예정이었으나 현재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한편, 상장회사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경감된 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40% 이상을 공개하고 특정요건을 충족한 상장회 사의 경우, 상기 세율에서 3%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500억 루피아 이하인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2단계 세율이 적용됩니다.

i) 과세표준 X (48억 루피아/총 매출액) X 일반 법인세율 X 50%

ii) 과세표준 X [(총 매출액 - 48억 루피아)/총 매출액] X 일반 법인세율
한편, 연 매출액이 48억루피아 이하인 특정기업의 경우, 최대 3년간 매출액의 0.5%를 납부하고 법인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2. Tax Residence (세법상 거주자)

소득세법 제2조 3항에서는 거주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었거나 주소를 둔 모든 법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부기관의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2조 1항의 납세의무자에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과 유사한 세무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Tax Payments (납세방법)

법인과 고정사업장은 원천징수세(PPh 22, PPh 23, PPh 4.(2)) 월 선납 법인세(PPh 25), 연간 법인세 신고 시 PPh 29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제3자의 원천징수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PPh 22는 특정물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며, PPh 23은 특정 국내 거래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PPh 4.(2)는 특정 거래에 대하여 최종 분리과세의 형태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월 선납법인세(PPh 25)와 PPh 29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PPh25는 직전 연도의 법인세신고서를 바탕으로 산출하며 매 월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입니다. PPh 29는 법인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

기간 종료 후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산출하고 PPh 25, PPh 22, PPh 23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차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의 소득은 인도네시아내의 거래상대방의 원천징수(PPh 26)의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90.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소프트웨어 솔루션 납품 및 설치 용역시 세금 및 조세협약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거래는 경우에 따라 재화의 구매, 사업소득 또는 로열티의 지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거래가 재화의 구매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에 납부하여야하는 소득세는 없으며, 사업소득 또는 로열티로 분류되는 경우 인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액(PPh 26)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인니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의 경우,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동 원천징수세액은 면제가 가능하며, 로열티의 경우, 동 원천징수세액은 15%로 경감 가능합니다. 한편, 한국-인니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기업은 DGT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고정사업장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된 경영장소 : 사무실, 공장, 작업장 등
- 6개월 초과 건축, 건설, 조립, 설비 공사
- 3개월 초과 용역 서비스 제공
- 특정 대리인 (기업을 대신해 계약 체결권을 가지거나 기업의 재화나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만약, 소프트웨어 설치/구축용역이 인도네시아에서 3개월을 초과하여 수행되는등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니에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금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니 과세당국에서 문제를 삼지 않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거래가 재화의 구매, 사업소득 또는 로열티 거래에 해당하
는지는 거래내용 및 계약서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Q91. 인도네시아 내의 세금 환급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인도네시아에 세금 환급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납부세액 또는 선납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환급은 세무조
사를 통하여 환급액이 결정된 후 지급이 이루어지며, 세무조사결과는 환급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 세무조사 결과 환급이 아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세금이 고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 환급신청 전에는 세금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
는지 다른 세무적 문제는 없는지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기 세금의 환급은 인도네시아 거주자(납세자)만 가능하며, 고정사업장이나
인도네시아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세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담하므로 세금의 환급이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과오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돌려받아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비거주자인 한국기업이라면 한국에서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
부세액 공제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에 따라 100%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
국납부세액 공제 증빙이 인도네시아어로 표시되기 때문에 한국의 세무서
담당자들 중에 영어로 표기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92.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해외(인도네시아 비거
주자)로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의 20%를 원천징수
(PPh 26)하여야 하며,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조세협약)에 따라
이러한 원천징수세를 면제받거나 경감을 받으려면 반드시 DGT 서류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요청은 타당해보입니다.
DGT Form의 Part 2는 소득을 수령하는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
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거주지국 관할 세무서로부터 확인

(담당자 서명 및 세무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 간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위하여 요구되는 상대방 국가 서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홈택스등을 통하여 영문 거주자증명서

MINISTRY OF FINANCE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FORM DGT)
DIRECTORATE GENERAL OF TAXES
CERTIFICATE OF DOMICILE OF NON RESIDENT FOR INDONESIA WITHHOLDING TAX

Guidance:
 1.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a person (which includes a body of a person, corporate or non-corporate) who is resident of a country which has concluded Double Taxation Convention (DTC) with Indonesia.
 2. For a person who is:
 a. a banking institution, or
 b. a pension fund,
 complete only DGT Page 1.
 3. For individual, complete PART I and PART II of DGT Page 1, and PART IV and PART II of DGT Page 2.
 4. For non-individual other than mentioned in number 3, complete PART I and PART II of DGT Page 1, and PART V, PART VI, and PART VII of DGT Page 2.
 5. All particulars in the form are to be properly furnished, and the form shall be signed as completed. This form must be verifi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its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tax office in the country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 tax resident before submitted to Indonesian administering, administration.

PART I - INCOME RECIPIENT
 Tax ID Number: _____
 Name: _____
 Full address: _____
 Country: _____
 Contact number: _____
 E-mail: _____

PART II - CERTIFICATION BY COMPETENT AUTHORITY OR AUTHORIZED TAX OFFICE OF THE COUNTRY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tax relief, it is hereby confirmed that the taxpayer mentioned in Part I is a resident in _____ for the period _____ to _____, within the meaning of the Double Taxation Convention as approved with Double Taxation Convention concluded between Indonesia and _____.

PART III - DECLARATION BY THE INCOME RECIPIENT (BANKING INSTITUTION AND PENSION FUND)
 I declared that:
 1. This company is not an Indonesian resident taxpayer;
 2. This company is resident of _____ for income tax purposes within the meaning of DTC of both countries;
 3.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is not to obtain the benefit under the convention directly or indirectly that is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DTC;
 4. In relation with the earned income, this company is not acting as an agent, nominee, or conduit;
 5. The beneficial owner is not an Indonesian resident taxpayer and/or not a resident taxpayer of the country other than mentioned in Part I, and;
 6.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stated in this form and to the best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PART IV -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1. Place and Date of birth (month/year): _____ (21)
 2.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is to directly or indirectly obtain the benefit under the convention that is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DTC. Yes No (22)
 3. Are you acting as an agent or a nominee? Yes No (23)
 4. Do you have permanent home in Indonesia? Yes No (24)
 5. In what country do you ordinarily reside? _____ (25)
 6. Have you ever been resident in Indonesia? Yes No (26)
 If "Yes", in what period? _____ to _____ (27)
 Please provide the address: _____ (28)
 7. Do you have any office, or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onesia? Yes No (29)
 If "Yes", please provide the address: _____ (30)

PART V -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RECIPIENT IS NON INDIVIDUAL
 1. Country of registration/incorporation: _____ (31)
 2. Which country does the place of management or control reside? _____ (32)
 3. Address of head office: _____ (33)
 4. Address of branches, offices, or other place of business in Indonesia (if any): _____ (34)
 5. The entity has received economic substance either in the entity's establishment and/or the execution of its transaction. Yes No (35)
 6. The entity has the same legal form and economic substance either in the entity's establishment and/or the execution of its transaction. Yes No (36)
 7. The entity has its own management to conduct the business and such management has an independent discretion. Yes No (37)
 8. The entity has sufficient assets to conduct business other than the assets generating income from Indonesia. Yes No (38)
 9. The entity has sufficient and qualified personnel to conduct the business. Yes No (39)
 10. The entity has business activity other than receiving dividend, interest, royalty sourced from Indonesia. Yes No (40)
 11. The purpose of the transaction is to directly or indirectly obtain the benefit under the convention that is contrary to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DTC. Yes No (41)

PART VI - TO BE COMPLETED IF THE INCOME RECIPIENT IS NON INDIVIDUAL AND THE INCOME EARNED IS/ARE DIVIDEND, INTEREST, AND/OR ROYALTY
 1. The entity is acting as an agent, nominee or conduit. Yes No (42)
 2. The entity has controlling rights or dispose rights on the income or the assets or rights that generate the income. Yes No (43)
 3. No more than 50 per cent of the entity's income is used to satisfy claims by other persons. Yes No (44)
 4. The entity has, for its own asset, capital, in the facility. Yes No (45)
 5. The entity has contracts which obliges the entity to transfer the income received to resident of third party. Yes No (46)

PART VII - DECLARATION BY THE INCOME RECIPIENT
 I declared that: I have examined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an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t is true, correct, and complete. I further declared that: I am not an Indonesian resident taxpayer; will not be an Indonesian resident taxpayer during the period mentioned in Part II, (47)
 This company is not an Indonesian resident taxpayer and/or not a resident taxpayer of the country other than mentioned in Part I. (48)

Signature of the income recipient or individual authorized to sign for the income recipient: _____ Place, Date (month/year): _____ Capacity in which acting: _____
 Signature of the income recipient or non-individual authorized to sign for the income recipient: _____ Place, Date (month/year): _____ Capacity in which acting: _____

This form is available and may be downloaded at the website: <http://www.pajak.go.id> (DGT) Page 1
 This form is available and may be downloaded at the website: <http://www.pajak.go.id> (DGT) Page 2

(Certificate of Domicile/Residence)를 발급받으면 Part 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제청령 PER 25/PJ/2018에 따르면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과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DGT Form의 Part IV, V, VI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art IV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Yes”가 있는 경우, Part V의 5번부터 10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1번에 대한 답변이 “Yes”인 경우, Part VI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번 또는 5번의 답변이 “Yes”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93.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상한선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수출포함)하는 자로 연간 전체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상인지를 의미합니다.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Pengusaha Kecil)는 일반과세자로서의 의무가 없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일반 과세자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E Faktur)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선택한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한 의무를 갖습니다. 매달말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부가세신고 이전에 먼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Rp 48억루피아를 초과하여 일반과세자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해당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내역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당국은 직권으로 해당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로 지정하여 부가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은 매출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한 이후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점까지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Q94. 지사로 진출했는데,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세금을 납부하라 합니다. 이 경우 대응방안은 없는 건가요?

인도네시아에는 순수 연락사무소, 무역지사, 건설지사 등 여러 종류의 지사가 있습니다. 순수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무역지사나 건설지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세무서에서 지사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경우 우선 회사가 어떤형태의 지사로 설립이 되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순수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였더라도 인도네시아 세법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소득세를 부담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대상은 한국인 주재원 수와 비용집행 내역이 실무적인 판단 근거가 되며, 인원대비 비용집행이 많다면 영업목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간주 될 위험이 높습니다.

고정사업장 과세를 해결한 사례를 보면 3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소명하여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대표사무소의 인력 소수에 불과하여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주장하는 총수입 금액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2. 대표사무소의 총비용이 적극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작다는 점.
3. 월간시장 동향 보고 등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볼 때 영업이 아닌 시장조사와 연락사무소 역할만을 수행한 것이 명확하다는 점.

한편, 무역지사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제 15조와 재무부장관령 No.634/KMK.04/1994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무역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거래금액의 1%를 간주이익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주이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세후 순이익에 대한 배당세를 과세하여 총 0.44%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의 법인세율 30%과 조세협약에 따른 감면세율이 적용되기 전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세무서에 따라 현재 법인세율과 조세협약에 따라 감면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0.298%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무역지사의 형태로 인도네시아에 진출을 하였다면 실질적인 영업활동 행위를 수행하였는지를 떠나서 과세가 될 위험이 높으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 재산권]

Q95.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Hak Kekayaan ntelektual 줄여서 HKI로 칭하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권 (Hak Paten 20년, 실용신안은 10년)
- 2) 상표권 (Hak Merek 10년)
- 3) 저작권 (Hak Cipta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 4) 산업디자인 (Desain Industri 10년)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모조품과 상표권 침해 사례가 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 고조 되고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름을 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들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침해자들에게도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반 시 벌칙조항 집행이 엄격하지 않아 이 유명무실하게 취급되었으나 점점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견되고 이에 대한 소송이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창조경제에 관한 2019년 법률 제24호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2022년 정부규정(PP) 제24호를 발표했습니다. 7월 12일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한 이 규정은 창조경제 파이낸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상품 마케팅 시스템 개발 촉진 창조경제 기반시설, 창조경제 행위자에 대한 인센티브 창조 경제개발에 대한 중앙정부 및 또는 지방정부의 책임과 지역사회 참여 재정분쟁 해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령은 창조경제가 문화유산, 과학 및 기술에 기반한 인간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두 번째 부분은 은행 금융기관 및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지적 재산권 기반금융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제정된 최신 법령들입니다.

- a. Undang-undang No. 7 tahun 1994 tentang Persetujuan Pembentukan Organisasi Perdagangan Dunia
- b. Undang-undang No. 32 tahun 2000 tentang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

- c. Undang-undang No.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 d. Undang-undang No.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
- e. Undang-undang No.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 f. Undang-undang No.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g. Undang-undang No. 13 tahun 2016 tentang Paten
- h. Undang-undang No.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

2. 상표권 (Hak Merek)

인도네시아 상표법이 주지·저명한 상표(Well-Known Mark)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로고, 이름, 단어, 문자, 숫자, 색상 배열의 형태로 2차원 또는 3차원, 사운드, 홀로그램,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거래 활동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생산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 중 2개 이상의 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표등록 신청이 거부됩니다.

- 1) 이전에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등록된 다른 당사자의 마크와 원칙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우
- 2)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3자에 속하는 잘 알려진 상표와 원칙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우
- 3) 다른 종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당사자가 소유한 유명 상표와 원칙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정부 규정에서 추가로 규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4) 알려진 지리적 표시와 원칙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우
- 5) 권리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명인의 이름, 사진 또는 타인이 소유한 법인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유사한 행위인 경우
- 6) 권한있는 당국의 서면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국제 기관의 이름, 깃발, 상징 또는 상징의 이름 또는 약어를 모방하거나 유사한 경우
- 7) 관계 당국의 서면 승인을 제외하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 표지, 도장 또는 인장을 모방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록상표는 해당상표의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동안 법에 의해 보호되며 보호 기간은 연장가능

※ 상표 등록 절차

- 1) 소정 출원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 후 특허청에 신청 (단, 외국소재 출원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2) 출원일로부터 15일후 방식심사 결과통보 및 출원일 부여 (방식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통지서 발송)
- 3) 출원일 부여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상표공보에 출원 공고됨. 공고기간은 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 제기 가능
- 4) 이의신청이 접수될 시, 특허청은 2주일 내에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서 사본을 전달하며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반박서를 제출해야함. 반박서 접수 후 특허청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 실시
- 5) 출원공고 기간 중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출원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체심사 진행되며 심사기간은 150일임. 등록 결정 시 상표 공보에 게재되며 상표등록증 발급
- 6) 해당 출원이 실체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이유가 통지되며 출원일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Undang-undang No 20 Tahun 2016 tentang merk dan indikasi geografis

3. 특허권 (Hak Paten)

기술 분야의 특정문제 해결 활동에 쏟아 부어진 발명가의 아이디어로서 일반적으로 제품 또는 프로세스, 또는 제품 및 프로세스 개선 및 개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1) 발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 새로운 발견. 특허출원 당시 그 발명이 이전에 공개된 기술과 다른 경우에 해당
 - 나) 독창적인 단계. 공학분야에 일정한 전문성을 가진자로서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 다)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발명. 본 발명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을 경우
- 2) 특허권 보호 기간:
 - 가) 특허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부여된다
 - 나) 단순 특허는 단순특허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부여된다
- 3) 특허권 취득조건
 - 가) 반드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나) 한가지 발명에 대해 한가지 특허권 부여
 - 다) 법무성이 정해 놓은 비용을 특허국에 납부해야 함
 - 라) 인도네시아 영구거주자가 아닌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가능
- 4) 특허출원절차
- 가) 소정신청양식에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발명에 관한 설명서와 함께 제출 (단, 외국 소재 출원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나) 출원일로부터 14일 후 방식심사 결과통보 및 출원일 부여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정통지서가 발송됨)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6개월간 특허공보에 출원 공고.
 - 다) 특허등록에 이의가 있는 제3자는 공고기간 동안 항변서 제출로 이의신청 가능.
 - 라) 출원인은 특허출원 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실질심사 요청 (추가 비용 발생)
 - 마) 실질심사 요청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여부 결정 및 통지.

4. 저작권 Hak Cipta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저작물이 유형의 형태로 구현된 이후 선언적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하는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1) 보호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서적, 컴퓨터 프로그램, 소책자, 출판된 저작물의 배치, 그 밖의 모든 저작물
 - 나) 강연 · 특강 · 연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창작물
 - 다) 교육과 과학의 이익을 위한 소도구
 - 라) 자막이 있거나 없는 노래 또는 음악
 - 마) 드라마 또는 뮤지컬 드라마, 무용, 안무, 외양, 마임
 - 바) 회화, 그림 조각, 서예, 조각, 조각, 콜라주 및 응용 예술과 같은 모든 형태의 순수 예술
 - 사) 건축
 - 아) 지도
 - 자) 바틱 아트
 - 차) 사진 촬영
 - 카) 번역물, 해석, 각색, 선집 및 기타 저작물
- 2) 저작권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저작권 보호 : 창작자 수명 + 70년
- 나) 컴퓨터 프로그램: 초판 이후 50년
- 다) 출연자 : 첫 공연 이후 50년
- 라) 음반제작자 : 창작 후 50년
- 마) 방송기관 : 첫 방송 이후 20년

3) 저작권 등록절차

- 가) 창작물 등록신청서와 작품의 샘플 또는 그 대체품과 함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제출
- 나) 저작권등록을 위한 방식심사 및 실질심사
- 다) 방식심사 요건 누락 시 3개월 내 통보 및 보완
- 라) 방식요건 및 실질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1~3개월 내저작권 등록증명서 발급

5. 산업디자인권 (Desain Industri)

3차원 또는 2차원 패턴으로 구현될 수 있는 미적 느낌을 주는 3차원 또는 2차원 형태의 선이나 색 또는 선과 색의 형태, 구성 또는 구성에 대한 창작물 제품, 상품, 산업상품 또는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등록 가능한 산업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디자인등록 출원일 현재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인의 공개와 동일하지 아니한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
- 나) 법령,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종교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2) 산업디자인 보호기간:

산업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타인의 동의없이 관련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수출 및 배포하는 것 금지 가능

3) 산업디자인등록 출원 절차

- 산업디자인 등록신청서와 산업디자인의 물리적 예시등 제출 (단, 외국 소재 출원인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방식심사 후 모두 충족 할 시 3개월 동안 공고,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 제기 가능

- 나) 출원인은 이의제기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견제출 가능
 - 다) 공고 기간 후 6개월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여부 결정 및 통지
- 4) 산업디자인권자
- 디자이너
 - 디자이너와 정부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이상 정부가 보유
 - 디자이너와 사기업간 고용관계를 통해 산업디자인이 창작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이상 디자이너가 보유

Q96.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적 재산권 침해 혐의가 발견되면 지적 재산권 총무국 전자 불만신청서 웹사이트 (<https://pengaduan.dgip.go.id/>)를 통해 발견 사항을 신고 및 고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된 상표 등록 말소 신청

2016년 상표에 관한 법률 제20호 제76조에 의거하여 이해관계인은 등록된 상표에 대해 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말소 소송은 상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상표권 침해 소송

상표법 제83조에 의거하여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등록상표 라이선스의 소유자는 유사한 상품에 원칙적으로 또는 전체가 유사한 상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 불법사용으로 인해 손해배상 및 상표 불법 사용금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상표권 침해 소송은 상업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 또는 기타 대체 분쟁 해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규정합니다.

- 1) 타인의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로 제품/서비스를 무단으로 생산하고 유통한 자는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벌금 Rp. 2,000,000,000(20억 루피아)형에 처한다

-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 및 유통한자는 최대 4년의 징역 또는 벌금Rp. 2,000,000,000(20억 루피아)형에 처한다
- 3)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환경교란 및 사망을 초래한 자는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Rp. 5,000,000,000(50억 루피아) 벌금형에 처한다.

Q97. 진출하려고 보니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보호 원칙은 먼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한다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록된 자가 상표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먼저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상표권자로 인정되는것이 아니라 먼저 등록절차를 마친 상표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등록된 상표가 미사용되었거나 또는 최근 3년동안 시장에서 상품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권 취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등급의 상품/서비스에 있는 동일한 상표에 대해 잘 알려진 상표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습니다. 유사성 판단 및 결정은 제품/서비스의 성격, 제품의 의도된 용도, 상보성, 경쟁성, 유통 경로, 소비자, 생산 원산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Q98. 상품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일 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해당 플랫폼 온라인 업체에 (또고페디아, 쇼피, 부카라뻑 등에 컴플레인을 신청하는 절차가 자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음) 본 위반 사실을 신고합니다
2.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 (Ditjen HKI)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3. 상법 법원 (Pengadilan Niaga)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4. 경찰에 지적재산권 위반 침해사실을 신고합니다

Q99.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한국 기업에게 상의없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누가 가장 먼저 등록을 하였는가에 따라 먼저 등록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진정한 상표보유권자인가에 관한 실질적인 확인작업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누가 먼저 신고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한국의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상표권을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려고 하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한국에 이미 상표권 등록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우선적 처리 신청 형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상표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이미 파리에서의 상호간 산업자산보호 약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무역거래 및 바이어 상담 시, 제품의 상표권 소유자는 사전에 인도네시아에 사전 상표등록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들어 수입업자 및 화교들이 한국산 제품의 상표를 사전등록, 한국산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가짜제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마켓에서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주위를 요합니다.

KOTRA 자료 22-095

인도네시아 무역 · 투자 FAQ

인도네시아 진출시 참고할만한 무역 · 투자 가이드

발행인 | 유정열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22년 10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의처 | KOTRA 자카르타무역관
(+62-21-574-1522)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와 PT. BANSEOK LAW FIRM INDONESIA에 있습니다.



ISBN : 979-11-402-0377-2 (93320)
979-11-402-0378-9 (95320)(PDF)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